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20. 9. 27.

제21대 총선 주요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

정치자금 상시 · 즉각 · 전체 공개 해야

목차

들어가며	4
요약	6
선거비용, 각 정당별 수입부 현황과 분석	10
수입 항목 관련 규정	10
현황과 분석	11
국고보조금	13
당비	14
차입금	15
그 밖의 수입	15
특이사항	17
‘의원 꺾주기’로 위성정당 급조해 국고보조금 이중 편취	17
수입과 지출 내역 불일치	17
중앙선관위의 허술한 관리감독	17
선거비용, 각 정당별 지출부 현황과 분석	18
지출 항목 관련 규정	18
현황과 분석	20
특이사항	23
선거비용 ‘0원’	23
정책선거 ‘실종’	23
선거비용 ‘오리무중’	23
선거비용, 시민의 관점으로 본 현황과 분석	24
재분류의 필요성	24
현황과 분석	26
공천 비용	29
선거운동 비용	31

홍보 비용	34
선거공보 비용	38
선거전략 비용	40
선거기구 비용	42
정책/공약 비용	43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보전 및 국가 부담	44
특이사항	46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과목만 공개	46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꾀수의 사회적 비용	48
정치자금법, 문제와 대안	49
3개월만 ‘한시 공개’ ➔ 언제나 확인 가능 ‘상시 공개’	49
활용 불가능 ‘이미지 공개’ ➔ 활용 가능 ‘데이터로 공개’	50
선거비용 과목만 ‘부분 공개’ ➔ 정치자금이라면 ‘전체 공개’	50
선거 다 끝난 후 ‘능장 공개’ ➔ 수입/지출 발생 직후 ‘신속 공개’	50
정보공개 ‘청구’ ➔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 재구축	51
<정치자금 공개의 해외 사례>	52
나가며	53

들어가며

배경/취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직선거가 있는 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함.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전부가 아닌 선거비용 과목 지출 내역만 단 3개월동안 공개하며, 공개되는 선거비용 내역 또한 다운로드 및 인쇄가 불가능하고 열람만 가능한 형태임. 이에 따라 21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비용내역은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만 열람이 가능했음. 이러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에 대한 시민들의 상시적인 견제와 감시를 어렵게 하는 제도임.
-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 뿐 아니라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전체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상시 공개가 필요함. 상시 공개에 미치지지는 않지만 중앙선관위도 2013년, 열람 기간 중 선거비용 외 모든 정치자금을 공개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경우 48시간 이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국회의 무관심과 사실상의 반대로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요원한 상황임.
- 이에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주요 8개 정당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한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는 사본을 스캔한 그림 파일로 약 2천여 장이었음. 문제점이 있는지 육안으로 살피거나 통계를 내어 비교하기는 불가능한 형식임. 참여연대는 데이터 입력을 위해 시민 자원활동가를 모집, <열려라데이터 1기>를 구성하고,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2천여 장이 넘는 주요 정당의 수입부 및 지출부를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재가공함. 그리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서 주요 정당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재분류한
주요 정당 선거비용 보러가기](#)



[보고서에 삽입된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 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사실상 시민들의 감시를 피해왔다는 것은 물론 정치자금내역과 회계보고 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함.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상 금액 오류 뿐 아니라 정치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한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이 발견된 것임. 이는 그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생긴 문제점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 제 정당의 회계보고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관위의 관리감독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함. 정당의 정치자금은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직후에도 감시할 수 없고, 선거일로부터 최소 40일 이후 선관위가 지정한 공고일부터 단 3개월간 열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나, 정치자금법 제40조와 제42조를 개정하고 상시공개하도록 해야 함.

분석 대상

- 참여연대가 분석한 주요 8개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보고된 수입부 및 지출부 상세 내역임. 해당 기간 중 창당하거나 합당한 경우 창당일 및 합당일을 그 기준으로 함. 8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으로 20대 국회 원내 정당(3석 이상)이거나, 21대 국회에서 원내정당이 된 정당임.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한 내역이 없었음. 그러나 중앙당 차원의 선거운동대책기구를 발족했고, 실제 21대 총선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분석 대상에 포함함.
- 정치자금 수입은 정치자금법으로 규정하지만, 지출에 대한 규정은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 회계실무에 혼재되어 있음. 이를 한데 모아 이에 따른 수입부, 지출부 내역을 분석함.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한 8개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선거비용 과목 뿐 아니라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그 밖의 경비 과목 등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된 지출을 확인함. 이에 21대 총선에서 실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 수입 및 지출내역 분석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천, 선거공보, 선거전략 등의 항목으로 재분류해 분석함.

❖ 주요 용어

- 계정 : 8개 주요 정당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의 수입부는 세금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과 세금으로 지원받지 않는 ‘보조금외’ 계정으로 구분됨. 예를 들면, 수입부의 국고보조금 계정은 정당이 국고보조금(세금)을 수령한 내역을 기입하고, 지출부의 국고보조금 계정은 정당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세금) 중에서 지출한 내역을 기입하는 것임.
- 과목 : 정치자금이 쓰인 목적별로 구분하는 용어. 수입부는 전년도이월, 당비, 기탁금, 후원회 기부금, 보조금, 차입금, 기관지발행사업수입, 보조금지원금(상급, 하급), 보조금외지원금(상급, 하급), 그 밖의 수입 과목이 있음. 지출부는 선거비용, 인건비, 사무소 설치 운영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 밖의 경비, 보조금지원금(상급, 하급), 보조금외지원금(상급, 하급) 과목이 있음.
- 예를 들어 ‘선거보조금 계정의 선거비용 과목’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보조금을 선거비용에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함.

-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한 정치자금만 단 3개월 공개, 열람하도록 함.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한 8개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선거비용 과목 뿐 아니라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그 밖의 경비 과목 등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된 지출을 확인함.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판단에 ‘실제 영향을 끼친 선거 비용’을 살펴보기 위해 각 정당의 지출 내역을 재분류하고 분석함.
- 참여연대는 8개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수입 및 지출 내역과 참여연대가 재분류한 지출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함.

1. 주요 정당의 회계보고서 수입부의 문제점

‘의원 꺾주기’로 위성정당 급조해 국고보조금 이중 편취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함. 20대 국회에서 ‘꼼수 제명’을 통한 ‘의원 꺾주기’로 위성정당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은 약 24억원을, 미래한국당은 약 67억원을 수령해 총 9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함.
- 선거가 끝난 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 흡수합당되면서 정당의 잔여 재산은 두 정당에 고스란히 이월됨.

수입과 지출 내역 불일치

-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으로부터 ‘미래한국당 임대료’로 150만원을, ‘미래한국당 홍보비’로 100만원의 수입 내역이 있는 반면, 같은 날 미래한국당의 지출내역에는 해당 지출이 없음.
- 더불어민주당의 수입부 중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 기간 중 수입으로 거둔 심사비 수입 내역을 찾을 수 없음.
- 교섭/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는 국회사무처가 해당 정당에 지급하나, 정의당 수입부에만 수입내역이 기입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정치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한 사례들이 확인됨.

중앙선관위의 허술한 관리감독

- 미래통합당은 합당 과정에서 각 정당으로 인수 받은 잔여 재산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전년도이월 수입으로 통합해 보고함.
- 민생당의 경우, 수입부 중 보조금외 계정의 일부 과목에서 누계액이 다른 오류가 발견됨.

- 해당 정당의 회계보고 및 회계감사가 불성실한 것이 드러난 것으로, 각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검수하는 중앙선관위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2. 주요 정당의 회계보고서 지출부의 문제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비용 '0원'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탈법적 위성정당 창당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었음. 두 정당은 선거비용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함.
- 즉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238억 여원(52.88%)은 선관위 공개 대상인 선거비용 과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기간에도 비공개됨.

21대 총선도 정책선거 '실종'

- 각 정당의 지출 총액 대비 가장 낮은 지출항목이 '정책개발비'임. 8개 주요 정당 모두 정책개발비로 1%조차 쓰지 않음.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정책개발비로 지출한 내역이 없음. 매 선거마다 제기되었던 '정책 실종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정책개발비 계정으로 지출됐다 하더라도 정책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음. 미래통합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여론조사비로, 미래한국당은 공천 자료 인쇄비로 지출한 내역을 정책개발비로 보고하여 실제 정책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선거비용 '오리무중'

- 3개월간 공개하는 선거비용 과목 지출 내역만으로는 선거시기 주요 정당이 선거를 위해 사용한 정치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움.
-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통상적으로 간주되는 선거비용이 선거비용 과목 뿐 아니라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그 밖의 경비 등에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3. 참여연대의 선거비용 재분류로 드러난 문제점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과목만 공개

-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한 내역만 공개하도록 규정함.
- 민생당은 단 23.7%만 공개되었고, 정의당은 35.97%, 미래한국당은 75.38%, 열린민주당은 79.48%, 국민의당은 81.28%, 더불어민주당은 83.32% 등 정치자금의 일부분만이 공개되었음.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꼼수의 사회적 비용

- 참여연대 재분류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약 81억,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약 85억의 선거비용을 지출함. 이는 8개 주요 정당의 평균 선거비용인 약 41억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차이가 나는 규모임.
- 21대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미래한국당은 약 48억, 더불어민주당은 약 39억의 선거비용 보전/부담 비용을 수령함. 이 보전/부담 비용은 합당 후 존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각각 지급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거대양당의 예산만 확보해준 것임.

4. 정치자금법, 문제와 대안

3개월만 ‘한시 공개’ → 언제나 확인 가능 ‘상시 공개’

-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선관위에서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공고일로부터 단 3개월만 공개함. 열람기간 외의 공개를 금지하기 때문에 열람기간 종료 후에는 개인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함. 그러나 3개월만 공개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가 없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상시적으로 공개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활용 불가능 ‘이미지 공개’ → 활용 가능 ‘데이터로 공개’

- 중앙선관위는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회계보고서 중 선거비용내역 사본을 스캔하여 다운로드 및 인쇄가 불가능한 그림 파일로 공개하여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를 공개할 때는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제공하고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야 함.

선거비용 과목만 ‘부분 공개’ → 정치자금이라면 ‘전체 공개’

- 21대 총선에서 공개된 각 정당의 선거비용은 전체 정치자금내역의 적게는 1/4(민생당 23.7%)부터 많아도 3/4(더불어시민당 83.32%) 정도에 불과함. 유권자는 각 정당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출한 정치자금의 규모와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없음.
- 선거비용 뿐 아니라 정당의 회계보고서 전체 공개를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의 활동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정치자금내역은 전체 공개가 되어야 함.

선거 다 끝난 후 ‘능장 공개’ → 수입/지출 발생 직후 ‘신속 공개’

-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난지 48일이 지난 후 선거비용 과목만을 공개함.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1월 31일, 정당의 경우 2월 15일로 연 1회 선관위에 제출하고 있음.
- 선거일 전에도 선거에 필요한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각 정당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출했는지 제때 파악하여 감시할 수 없는 상황임.

- 정치자금 수입, 지출 원인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즉각 공개하고 원하는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보공개 ‘청구’ →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 재구축

- 중앙선관위가 3개월 동안 공개하는 선거비용 열람기간을 놓친 시민은 중앙선관위에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각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원인이 발생한 직후 신속히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해야 함.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정치자금을 상시, 즉각 공개를 통해 공개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5.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심 없는 국회

-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 상시 공개를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단 2건밖에 발의¹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임기만료폐기됨. 21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공개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은 2020년 9월 15일 기준 단 1건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공개 방식을 일임하여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와는 거리가 있음.
- 국회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예 적극 나서야 함.

¹ [20163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과 [20190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선거비용, 각 정당별 수입부 현황과 분석

1. 수입 항목 관련 규정

국고보조금(세금 지원) 계정의 해당 과목 : 보조금(중앙당), 상급/하급당부 보조금 지원금

보조금 외 계정의 해당 과목 : 당비, 기탁금(중앙당), 후원회기부금(중앙당), 차입금, 하급당부 보조금외 지원금, 기관지발행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

- 정치자금의 수입과 회계보고 등은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규칙, 중앙선관위가 발행하는 '정치자금 회계실무'에서 규정함.
- 정치자금법 4조에 따른 당비, 10조에 따른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 22조에 따른 기탁금, 25조, 26조 및 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정당이 수령할 수 있는 수입의 합법적 근거임.
- [표 1]은 정치자금법의 위임을 받은 <정치자금사무규칙 별표1> 수입·지출 과목해소표를 통해 수입 및 지출과목에 해당하는 내역을 설명하고 있음.

[표 1] <정치자금사무규칙 별표1> 수입·지출 과목해소표 중 수입 과목

과목	과목해소(설명)
당비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보조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후원회기부금	·후원회가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으로 제공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지원금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차입금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기관지발행사업수입	·정당에서 발행하는 당보 등 간행물과 관련된 수입
그 밖의 수입	·예금이자 등 위의 과목 외의 수입

2. 현황과 분석

- 8개 주요 정당의 수입부 계정과목별 금액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음.
- 수입부 과목 중 세금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과목에 합산할 수 있는 **당비**, 개인 등에게서 정당이 자율적으로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차입금**, 예금이자와 같이 정치자금법규 상 정해진 과목이 없어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그 밖의 수입**을 분석 대상으로 함. 수입부 과목 중 정치자금법에 의해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탁금과 후원회기부금, 같은 정당(상급/하급당부)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인 지원금은 분석에서 제외함.
- 전체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80.04%)임. 그 다음으로 높은 정당은 민생당(69.74%), 더불어민주당(54.95%), 더불어민주당(46.89%), 미래통합당(48.9%), 정의당(34.97%)이었음. 국고보조금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정당은 국민의당(0.79%)과 열린민주당(0.64%)임.
-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80.04%)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고보조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54.95%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과 비슷한 규모의 차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 비중이 줄어든 결과임.
- 전체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38.53%)이었음. 그 다음으로 높은 정당은 정의당(22.20%), 미래한국당(12.93%), 열린민주당(10.82%), 미래통합당(7.61%), 더불어민주당(3.01%) 순임. 당비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정당은 민생당(0.90%)과 국민의당(0.78%)이었음.
- 당비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합당 때문인 것으로 보임. 미래통합당의 당비 수입이 7.61%에 불과한 반면, ‘전년도이월’ 과목이 35.16%에 달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합당하여 그 잔액을 이월받았기 때문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한 민생당 또한 당비 비율이 0.90%에 불과한 반면, 합당한 정당들의 잔액을 이월받아 전년도이월이 27.10%를 차지했음.
- 수입총액 중 **차입금**이 80% 이상인 정당은 국민의당(89.20%)과 열린민주당(88.02%)임. 더불어민주당은 수입총액 대비 41.28%, 정의당은 20.49%가 차입금이었음. **그 밖의 수입**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국민의당(9.22%), 미래통합당(7.12%), 미래한국당(6.02%), 민생당(2.15%), 정의당(1.17%), 더불어민주당(0.72%). 더불어민주당 0.01%이고, 열린민주당은 그 밖의 수입이 없음.
- 국고보조금, 당비, 차입금, 그 밖의 수입 등 각 계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표 2] 8개 주요정당 수입부 과목별 금액 (괄호는 각 정당의 수입 총액 대비 비율)(단위 : 원)

과목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전년도이월	4,668,013,323 (13.71%)		8,303,260,671 (35.16%)	
당비	13,120,294,040 (38.53%)	134,010,000 (3.01%)	1,797,090,532 (7.61%)	1,081,600,000 (12.93%)
기탁금	290,604,430 (0.85%)	1,525,350 (0.03%)	7,192,350 (0.03%)	3,813,380 (0.05%)
후원회 기부금	2,600,000 (0.01%)		158,583,784 (0.67%)	80,139,677 (0.96%)
국고보조금	15,966,616,770 (46.89%)	2,449,378,020 (54.95%)	11,549,324,820 (48.90%)	6,694,877,070 (80.04%)
차입금		1,840,000,000 (41.28%)		
보조금외지원금 - 하급당부			122,050,012 (0.52%)	
그 밖의 수입	3,962,639 (0.01%)	32,300,000 (0.72%)	1,680,622,040 (7.12%)	503,577,700 (6.02%)
합계	34,052,091,202 (100%)	4,457,213,370 (100%)	23,618,124,209 (100%)	8,364,007,827 (100%)
과목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전년도이월	1,128,737,236 (11.57%)			3,100,584,481 (27.10%)
당비	2,166,510,753 (22.20%)	30,153,289 (0.78%)	520,272,542 (10.82%)	102,770,337 (0.90%)
기탁금	58,442,950 (0.60%)	19,100 (0.00%)	19,100 (0.00%)	4,969,340 (0.04%)
후원회 기부금	840,000,000 (8.61%)		25,000,000 (0.52%)	7,467,428 (0.07%)
보조금	3,413,144,710 (34.97%)	30,677,770 (0.79%)	30,677,770 (0.64%)	7,979,657,920 (69.74%)
차입금	2,000,000,000 (20.49%)	3,450,000,000 (89.20%)	4,233,558,999 (88.02%)	
보조금외지원금 - 하급당부	38,152,630 (0.39%)			
그 밖의 수입	113,892,215 (1.17%)	356,700,000 (9.22%)		246,484,309 (2.15%)
합계	9,758,880,494 (100%)	3,867,550,159 (100%)	4,809,528,411 (100%)	11,441,933,815 (100%)

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 정치자금법 제5장 국고보조금에 따라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장애인추천보조금

보조금 과목 : <정치자금사무규칙 별표1> 수입·지출과목해소표에 따라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재

- 8개 주요 정당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 중앙선거위에 신고한 국고보조금 수령 총액과, 각 정당의 전체 수입액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3]과 같음.
- 미래한국당은 각 정당의 전체 수입액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으로 나타남. 전체 수입액 중 80%가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당비 수입 비율은 12.93%에 그침.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약 160억), 미래통합당(약 115억), 민생당(약 79억)이었음. 이 정당들은 20대 국회에서 의석을 보유해 경상보조금을 분기별로 수령해왔고, 이들이 보유한 의석수가 21대 총선 선거보조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그 다음은 미래한국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순임.
- 21대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약 67억원, 더불어민주당은 약 2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함.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더 많은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중 21대 총선 불출마 의원의 ‘꿈수 제명’, ‘의원 꺾주기’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함.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임. 이는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이 원인임.
- 경상보조금²은 지급 당시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에 경상보조금 전체 금액 중 절반(50%)을 우선 배분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씩을,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조건을 충족하는 정당에 대해 2%씩 1차 배분함. 1차 배분 후 잔여분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2차

²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④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배분하고,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3차 배분함. 선거보조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하여 지급함.

[표 3] 8개 정당 국고보조금 수령액 및 전체 수입액 중 비율 (전체 수입액 중 금액 순)

	보조금(단위 : 원)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당시 의석수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의석수	전체 수입 중 비율
더불어민주당	15,966,616,770	129석	120석	46.89%
미래통합당	11,549,324,820	자유한국당 105석, 새로운보수당 7석, 미래를향한전진4.0 1석	92석	48.90%
민생당	7,979,657,920	바른미래당 17석, 대안신당 7석, 민주평화당 4석	20석	69.74%
미래한국당	6,694,877,070	5석	20석	80.04%
정의당	3,413,144,710	6석	6석	34.97%
더불어시민당	2,449,378,020	-	8석	54.95%
국민의당	30,677,770	-	1석	0.79%
열린민주당	30,677,770	-	1석	0.64%

2) 당비

당비 과목 : <정치자금사무규칙 별표1> 수입·지출과목해소표에 따라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기재

- 2020년 5월 5일까지 전체 수입액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약 131억2천29만원에 달함. 2019년 12월 31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한해 당비 수입이 약 160억4천56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 4개월여만에 2019년 당비 수입 대비 81.77%를 차지함.
-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238개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을 공모했음. 해당 기간 동안 당비 수입은 총 17건으로 약 15억3천184만원임. 더불어민주당의 당비 수입 내역 중 단일 신고건수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한 것은 2월 18일 당비 2건 14억350만원, 2월 26일 당비 5건 11억9천367만원임. 더불어민주당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가신청 및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추가신청 공모를, 2월 2일부터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음.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공천이나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심사비 수입이 따로 보고된 바 없음.

-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건수와 금액만 기재한 것과 달리 미래통합당, 정의당은 건수를 포함 수입 경로(CMS 등)를 표기, 해당 당비가 수입된 경로를 구분하여 기재함.
- 미래한국당은 비실명처리된 개인 582명으로부터 최저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당비로 총 10억8천160만원을 수령하고, 그 외의 방법(CMS, 계좌이체 등)으로 수령한 기록이 없음.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5천5백만원까지 비실명처리된 총 9건(개인여부 식별 불가)으로 총 1억3천401만원을 수령함.

3) 차입금

차입금 과목 : <정치자금사무규칙 별표1> 수입·지출과목해소표에 따라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기재

- [표 2]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18억4천만원(41.3%)을 차입함.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원 꺾주기’로 원내 정당이 되어 1분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약 24억4천937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받고, 부족한 선거비용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차입해 마련했음.
- 국민의당은 ‘안00’로부터 34억5천만원(89.2%)을 차입함. 국민의당은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약 3천67만원(0.79%), 당비 수입이 약 3천15만원(0.78%)에 불과해 부족한 선거비용을 ‘안00’로부터 차입해 충당한 것으로 추정.
- 열린민주당은 21대 총선 자금 마련을 위한 ‘열린펀드’를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약 82억3천355만원(88%)을 차입함.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면 중앙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활용한 펀드였음. 열린민주당은 차입금인만큼, 선거 석 달 뒤 연 이자율 2%를 합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6월 30일, 펀드 환급을 진행함.

4) 그 밖의 수입

그 밖의 수입 과목 : <정치자금사무규칙 별표1>에 따라 과목 이외의 수입(예금이자 등)을 기재

- 미래통합당의 그 밖의 수입 내역 중 특이점은 2020년 2월 20일, 미래한국당으로부터 수령했다는 임대료 150만원과 홍보비 100만원임. 그러나 같은 날인 2020년 2월 20일을 비롯하여 미래한국당의 전체 지출 내역 중 미래통합당에 사무실 임대료와 홍보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음.
-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심사비, 경선거탁금 등 21대 총선 공천과 관련된 비용 약 16억5천777만원을 그 밖의 수입으로 기재함. 미래한국당은 심사료 수입 내역으로 552명에게서 총 5억350만원을 수령했으나, 과오납 및 공천 심사료 총 3억2천6백만원을 반환하여 최종

1억7천750만원의 수입을 거둠.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심사료 혹은 공모료 수입 내역 보고가 없음.

- 그 밖의 수입 내역에서 다른 정당과 차이를 보여준 정당은 정의당임. 정의당은 다른 정당이 기재하지 않은 두 개의 새로운 내역을 그 밖의 수입으로 기재함. 첫째, 정의당은 국회사무처로부터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5천9백만원의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를 수령함.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 원내정당에게 교섭/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를 지출함. 이를 수입으로 보고한 정당은 정의당을 제외하고 없음.
- 정의당은 2020년 3월 2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당내경선 우편요금 부담금 명목으로 약 5천205만원을 수령함.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4 제2항³ 및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3조⁴에 따른 것임. 정의당은 당내 경선 규정 등을 2019년 연말부터 마련하고, 비례대표 당내 경선 일정을 2020년 연초부터 시작함. 위성정당 창당과 합당, 신설 정당 창당 등으로 인해 후보등록일이 임박할 때 까지 후보자를 선출했던 타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선 일정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³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⁴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3조(경선관리비용) ①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할 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선거구위원회 및 경선투 · 개표관리위원회위원의 수당과 실비
2. 투표 및 개표사무원 수당과 실비
3. 경선선거인명부 분철 · 사본작성비용, 투표안내문 작성 · 발송비용
4. 투표용지 작성 · 관리비용
5. 투표 및 개표장소 임차비와 설비 및 유지비
6. 그 밖에 투표 및 개표사무관련 부대비용

②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경선관리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③중앙위원회는 국가가 부담하는 경선관리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본선거의 예산에서 지출하고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관리비용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산정하여 해당 정당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정당은 경선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관리비용을 납부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경선일 후 20일까지 이를 정산하여 해당 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의 경선관리비용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

3. 특이사항

1) ‘의원 꺾주기’로 위성정당 급조해 국고보조금 이중 편취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꼼수 제명’을 통한 ‘의원 꺾주기’로 국고보조금을 이중으로 편취함.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5/18),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5/29) 흡수합당되면서 정당의 잔여 재산은 두 정당에 각각 이월됨.
- 이는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교섭단체에 최우선 배분하여 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함.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해야 함.

2) 수입과 지출 내역 불일치

-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으로부터 ‘미래한국당 임대료’로 150만원을, ‘미래한국당 홍보비’로 100만원의 수입 내역을 보고한 반면, 같은 날 미래한국당의 지출내역에는 150만원의 임대료와 100만원의 홍보비 지출이 없음. 더불어민주당의 수입부 중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 기간 중 수입으로 거둔 심사비 수입 내역을 찾을 수 없음. 교섭/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는 국회사무처가 해당 정당에 지급하나, 정의당 수입부에만 수입내역이 기입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정치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한 사례들이 확인됨.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 시민의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3) 중앙선관위의 허술한 관리감독

- 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실무에서 합당된 경우 합당 전 각 정당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합당 과정에서 각 정당으로 인수 받은 잔여 재산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미래통합당의 전년도이월 수입으로 통합해 보고했음. 반면 민생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으로부터 이월받은 잔액을 정확하게 명시함. 참여연대가 정치자금 회계실무와 다른 미래통합당의 회계보고에 대해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불투명한 내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민생당의 경우, 수입부 중 보조금외 계정의 일부 과목에서 누계액이 다른 오류가 발견됨. 이에 대한 참여연대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민생당 회계보고담당자가 기입을 잘못했다고 해명함. 그러나 누계액이 다른 것은 정당의 회계보고담당자의 단순 실수일지라도 회계감사 또한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음. 해당 정당의 회계보고 및 회계감사가 불성실한 것이 드러난 것으로, 각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검수하는 중앙선관위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선거비용, 각 정당별 지출부 현황과 분석

1. 지출 항목 관련 규정

선거비용 :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인건비, 사무소설치·운영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지원금, 그 밖의 경비

- 정치자금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수입에 대한 부분과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 등을 규정함. 정치자금의 지출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사무규칙 및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하는 ‘정치자금 회계실무’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119조)과 선거운동비용이 아닌 것(120조)을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 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임.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비용이 아닌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소요 비용, △공천을 위한 소요 비용, △선거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납부금 및 수수료,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⁵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정치자금사무규칙**에 따라, 정치자금의 지출 계정과 과목은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구분됨.
 -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구분됨.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인건비, 사무소설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와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지원금,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한 정치활동비로 구분됨.

⁵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표 4] <정치자금사무규칙 별표1> 수입·지출과목해소표

항	목		과목해소(설명)
선거비용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기본경비	가. 인건비	·사무직원에 대한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 ·일반사무관계에 소요되는 여비 ·그 밖의 인건비
		나. 사무소설치·운영비	·건물신축 또는 매입 그 밖의 부대경비 ·임차계약에 의한 토지·건물·기계시설 등의 임차료 ·사무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선비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사무용에 한함) ·전신전화 그 밖의 공공요금 일체 ·소송사건에 필요로 하는 공탁금 그 밖의 제세공과금 ·그 밖의 사무소설치·운영비
정치활동비	가. 정책개발비		·중앙당의 정책연구소 운영경비 ·정책개발 부서의 기본경비(정책개발부서직원의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연료비·자동차유지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정책개발부서 직원의 교육·연수, 정책자료 제작비 ·정책개발 관련 여론조사비 ·외부연구소나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정책개발 관련 용역비 ·정책평가비(다만, 대규모집회를 통한 정책평가보고대회는 제외) ·정책개발관련 정책결정·평가 등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정책회의 개최비 ·그 밖의 정책개발비
		나. 조직활동비	·당원연수·교육관련 경비 ·강사료 등 특별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교재 및 연구자료 수집비 ·피교육자에 대한 급식비·여비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시설 임차료 및 유지비 ·정당의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당원집회 등 관련 경비 ·정당 내부의 지휘·감독 활동 경비 ·홍보 관련 경비 ·기관지 발행·배부 관련 경비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경비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 지원한 경비 ·그 밖의 조직활동비
	다. 여성정치발전비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관한 경비 ·그 밖의 여성정치발전비
	라. 지원금		·정당의 각급 당부간에 지원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지원금
	바. 그 밖의 경비		·상기 과목 외의 지출

2. 현황과 분석

- 선거비용 등의 정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9조, <정치자금사무규칙 별표1>에 따라 8개 주요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지출부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음.
- 2020년 5월 5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약 258억원을, 미래통합당은 약 180억원을 지출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임을 고려할 때, 2020년 5월 5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합하면 약 307억,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하면 총 약 245억의 지출이 있었음. 그 다음으로 지출총액이 높은 정당은 정의당 약 136억, 민생당 약 69억, 국민의당 약 48억, 열린민주당 약 44억 순임. 각 정당의 지출총액 규모만 놓고 보면 8개 주요 정당 중 지출총액이 가장 적었던 열린민주당에 비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지출총액은 약 6.9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의 지출총액은 약 5.5배 높았음.
- **선거비용**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83.32%), 국민의당(81.28%), 열린민주당(79.48%), 미래한국당(75.38%) 순임. 원내 의정 활동과 정당 활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의당(35.62%), 민생당(23.70%)은 선거비용 지출 비율이 낮음. 선거 직전 창당되어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당들이 선거비용 지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19조에 따른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 지출은 0원임.
- **조직활동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민생당(49.68%)과 더불어민주당(47.19%), 미래통합당(41.91%)이었음. 반면, 정의당(29.98%), 미래한국당(15.48%), 열린민주당(10.75%), 더불어민주당(2.77%), 국민의당(2.72%) 순으로 높았음.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선거운동 과목으로 지출을 할 수 없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조직활동비 과목 지출 비중이 높음. 실제 조직활동비 과목을 살펴보면 공천, 선거운동 등과 관련된 지출 내역이 다수 발견됨. 민생당 또한 선거 운동을 위한 비용의 다수를 조직활동비 과목으로 보고함. 조직활동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21대 총선 후보자에게 지원한 금액이 약 28억으로, 81.85%를 차지함.
- **인건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미래통합당(19.47%)임.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10.25%) 민생당(10.07%), 정의당(7.31%), 미래한국당(3.68%), 더불어민주당(3.24%), 국민의당(1.68%) 순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지출한 정당은 열린민주당(0.89%)이었음.
- 8개 주요 정당의 **정책개발비**는 전체 지출액 중 1%도 되지 않았음.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으로 0.71%에 불과함.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정책개발비 지출이 아예 없음. 그 다음으로 낮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0.1%), 미래한국당(0.11%), 민생당(0.59%) 순임.
- 8개 주요 정당 모두 **여성정치발전비** 또한 현저히 낮은 지출 비율을 보였음.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여성정치발전비로 지출한 내역이 아예 없음.

여성정치발전비 비율이 제일 높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3.19%)이며, 민생당(2.33%), 미래통합당(1.80%), 정의당(1.63%)순임.

- 미래통합당(29.61%), 더불어민주당(25.37%), 정의당(19.21%), 민생당(9.66%)은 경상보조금을 포함, 선거보조금이나 보조금외 계정으로 각 시도당에 **하급당부보조금** (보조금지원금-하급당부, 보조금외지원금-하급당부)을 지급함.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여성정치발전비 포함, 정책연구소, 시도당에 보조금 지원금을 지출한 내역이 없음.

[표 5] 8개 주요정당 지출부 과목별 금액 (단위 : 원)

과목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선거비용		-	4,047,166,818 (83.32%)	-	4,843,660,772 (75.38%)
기본경비	인건비	2,646,552,513 (10.25%)	157,432,722 (3.24%)	3,519,545,858 (19.47%)	236,564,670 (3.68%)
	사무소 설치 운영비	1,219,612,059 (4.72%)	161,634,852 (3.33%)	469,774,740 (2.60%)	16,136,810 (0.25%)
정치활동비	정책개발비	25,800,000 (0.10%)	-	128,450,000 (0.71%)	7,080,800 (0.11%)
	조직활동비	12,191,277,048 (47.19%)	134,751,544 (2.77%)	7,575,516,571 (41.91%)	994,456,419 (15.48%)
	여성정치발전비	823,877,964 (3.19%)	-	325,676,360 (1.80%)	-
	그 밖의 경비	2,370,748,000 (9.18%)	356,386,528 (7.34%)	703,874,900 (3.89%)	327,500,000 (5.10%)
	보조금지원금 - 하급당부	3,112,934,185 (12.05%)	-	4,091,281,906 (22.64%)	-
	보조금외지원금 - 하급당부	3,441,549,769 (13.32%)	-	1,260,706,180 (6.97%)	-
합계		25,832,351,538 (100%)	4,857,372,464 (100%)	18,074,826,515 (100%)	6,425,399,471 (100%)
과목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선거비용		4,855,528,450 (35.62%)	3,911,478,770 (81.28%)	3,544,314,697 (79.48%)	1,654,668,012 (23.70%)
기본경비	인건비	996,824,243 (7.31%)	80,617,307 (1.68%)	39,618,773 (0.89%)	703,008,036 (10.07%)
	사무소 설치 운영비	198,743,382 (1.46%)	304,152,204 (6.32%)	65,695,010 (1.47%)	197,339,176 (2.83%)

정치활동비	정책개발비	96,512,820 (0.71%)	-	-	40,953,000 (0.59%)
	조직활동비	4,086,979,932 (29.98%)	130,923,105 (2.72%)	479,227,943 (10.75%)	3,468,226,971 (49.68%)
	여성정치발전비	222,401,944 (1.63%)	-	-	162,740,586 (2.33%)
	그 밖의 경비	556,592,711 (4.08%)	243,225,600 (5.05%)	330,263,850 (7.41%)	80,014,720 (1.15%)
	보조금지원금 - 하급당부	273,592,278 (2.01%)	-	-	562,817,493 (8.06%)
	보조금외지원금 - 하급당부	2,344,221,472 (17.20%)	142,126,060 (2.95%)	-	111,410,254 (1.60%)
합계	13,631,397,232 (100%)	4,812,523,046 (100%)	4,459,120,273 (100%)	6,981,178,248 (100%)	

3. 특이사항

1) 선거비용 '0원'

- 주요 정당 지출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이 '선거비용' 과목에 해당하는 지출이 없다는 것임. 공직선거법 제119조제1항은 선거비용을 정의하며,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후보자, 예비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추천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할 수 없었음.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지만 불법·탈법적 위성정당 창당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었기 때문임.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선거운동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아님. 선거비용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지출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비용 과목만 공개하는 열람기간 동안에는 지출내역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선거보조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238억여 원(52.88%)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음.
- 두 정당은 선거비용을 정의한 공직선거법 119조 1항에 의거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선거운동) 경고를 받음. 더불어민주당 지출부의 내역을 살펴보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정당 광고를 할 수 없어 온라인 광고를 위해 지급했던 1억3천200만원의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 정책선거 '실종'

- 각 정당의 지출 총액 대비 가장 낮은 지출항목이 '정책개발비'임. 8개 주요 정당 모두 정책개발비로 1%조차 쓰지 않음.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정책개발비로 지출한 내역이 없음. 매 선거마다 제기되었던 '정책 실종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정책개발비 지출 비율이 0.71%로 가장 높았던 미래통합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여론조사비로, 정책개발비 지출 비율이 0.11%로 두 번째로 낮았던 미래한국당은 공천 자료 인쇄비로 지출한 내역을 정책개발비로 보고하여 실제 정책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선거비용 '오리무중'

- 2020년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단 3개월간 공개된 각 정당의 선거비용 과목만의 지출 내역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선거시기 주요 정당이 선거를 위해 사용한 정치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움.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일일이 살펴보고서야 선거비용 과목 뿐 아니라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그 밖의 경비 등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이 있음을 확인함.

선거비용, 시민의 관점으로 본 현황과 분석

1. 재분류의 필요성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한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모든 정당의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지출이 ‘선거비용’ 과목뿐 아니라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그 밖의 지출’ 과목 등에 포함된 것을 확인함.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과목만, 단 3개월 동안 공개하여 선거 기간 동안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그 밖의 지출’ 과목에서 지출한 비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확인됨.
- 정치자금법상에 규정된 수입부와 달리 지출부에 대한 규정(공직선거법, 정치자금사무규칙,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실무](#))이 복잡하고, 회계보고서 상 지출 총괄표 내역만으로 21대 총선에 정당들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임. 회계보고의 선거비용 구분은 시민들이 각 정당이 선거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 참여한 8개 주요 정당의 실제 선거비용 규모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의 지출부 내역 전체를 일일이 확인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재분류함. 분류 기준은 기간, 계정과목 및 항목에 관계없이 지출 내역에 기재된 내역을 중심으로 함.
- 참여연대는 주요 정당의 전체 지출 내역에 대해 △정당 활동, △사무소 설치 운영비, △공천, △선거운동, △공보물, △선거지원금, △기탁금, △하급당부보조,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 △차용금, △판독불가 등 11개 항목으로 재분류함.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없지만 중앙당 차원의 선거운동관련 기구 발족 후 21대 총선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따라 해당 정당 선거비용도 살펴봄.

[표 6] 8개 주요 정당 지출 내역에 대한 참여연대 재분류

과목	과목해소(설명)
정당활동	·창당 및 합당 관련 비용 ·통상적·정기적인 정당 활동으로 당내 의사결정기구 회의(최고위원회, 상무위원회 등), 당내 산하 기구(당내에 구성된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교육연수기구 등) 등
사무실 운영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관리비, 수선비 포함) ·소모품 및 복리후생비 ·부서운영비(당대표, 사무총장 등 포함) ·일상적 유지 비용 ·지급수수료 ·법률자문료 ·차입금 상환 등
공천	·공천관련 기구, 후보심사, 경선투표 등에 관련한 내역
선거운동	·선거공보, 선거기구, 정책/공약, 선거전략, 홍보(문자/음성메시지, SNS, 방송/신문광고, 인터넷광고, 현수막 등, 어깨띠 등 소품, 사진촬영, 영상제작비, 컨설팅, 로고송, 버스 등 차량, 기타)
선거지원금	·정당이 후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등
기탁금	·공직선거법 56조 제1항 2의2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납부하는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하급당부보조	·각 시도당 및 부설 정책연구소 지원금, 시도당 사무실 임대료, 각 시도당 선거사무소 개설 관련 비용 등
차용금	·타 정당에 대여한 금액 (더불어민주당만 해당)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	·국회사무처가 비교섭단체 정당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 비용 (정의당만 해당)
판독불가	·지출 내역을 식별할 수 없는 비용 (미래통합당만 해당)
기타	·당비·심사료·오입금 등의 반환, 모금 등

2. 현황과 분석

- 참여연대는 주요 정당의 전체 지출 내역에 대해 △정당 활동, △사무소 설치 운영비, △공천, △선거운동, △공보물, △선거지원금, △기탁금, △하급당부보조,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 △차용금, △판독불가 등 총 11개 항목 기준에 따라 8개 주요 정당의 지출 내역 재분류 현황은 [표 7]과 같음. 단 통상적·정기적인 정당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 ‘정당 활동’ 항목과 인건비를 포함해 일상적 유지 비용을 위해 소요되는 ‘사무소 설치 운영비’ 항목은 선거 참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분석에서 제외함.
-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두 정당의 선거비용 지출 내역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포함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의 소계를 각각 포함함.
- **공천 비용** 지출이 가장 높은 정당은 대부분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했던 미래통합당(21.68%)과 더불어민주당(12.48%)임. 반면 두 정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0.22%)과 미래한국당(2.18%)은 공천 비용이 현저히 낮음.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의 공천 비용 총액은 약 40억5천796만원,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약 32억3천470만원임. 국민의당(0.28%), 열린민주당(0.72%)은 공천에 1%도 지출하지 않았음.
- **선거운동 비용** 지출이 가장 높은 정당은 열린민주당(91.29%)과 국민의당(91.20%)이었음. 더불어시민당(86.63%)과 미래한국당(81.47%)은 선거운동 비용 비율이 높았던 반면, 더불어민주당(15.23%)과 미래통합당(18.34%)은 선거운동 비율이 낮음. 정의당은 40.52%를, 민생당은 30.91%를 차지함.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 비용 합산액은 총 약 81억4천123만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운동 합산액은 총 약 85억4천969만원임. 선거비용 총 지출이 제일 적었던 민생당(약 21억5천780만)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약 3.8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약 4배 정도 높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21대 총선을 치른 것임.
- 후보자에게 지급한 **선거지원금** 지출이 가장 높은 정당은 민생당(40.67%)임. 그 다음은 정의당(20.53%), 더불어민주당(20.43%) 순으로 높았음. 민생당은 후보자에게 6회에 걸쳐 총 28억3천9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함. 더불어민주당 또한 후보자에게 6회에 걸쳐 선거지원금을 총 약 52억7천700만원 등을 지급함. 정의당은 170명의 후보자에게 총 27억9천800만원을 선거지원금으로 지급함. 비율이 가장 낮은 정당은 미래통합당(6.09%)으로, 총 11억을 후보자(인원수 미기재)에게 지급함.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을 비롯,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또한 후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지출 내역이 없었음.
-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납부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지출도 있음.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라 비례대표 선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1인당 500만원을 기탁해야 함.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기탁금 지출이 없음. 기탁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정당은 미래한국당(1억9천500만원, 39명)이었고, 그 다음은 민생당(1억8천500만원, 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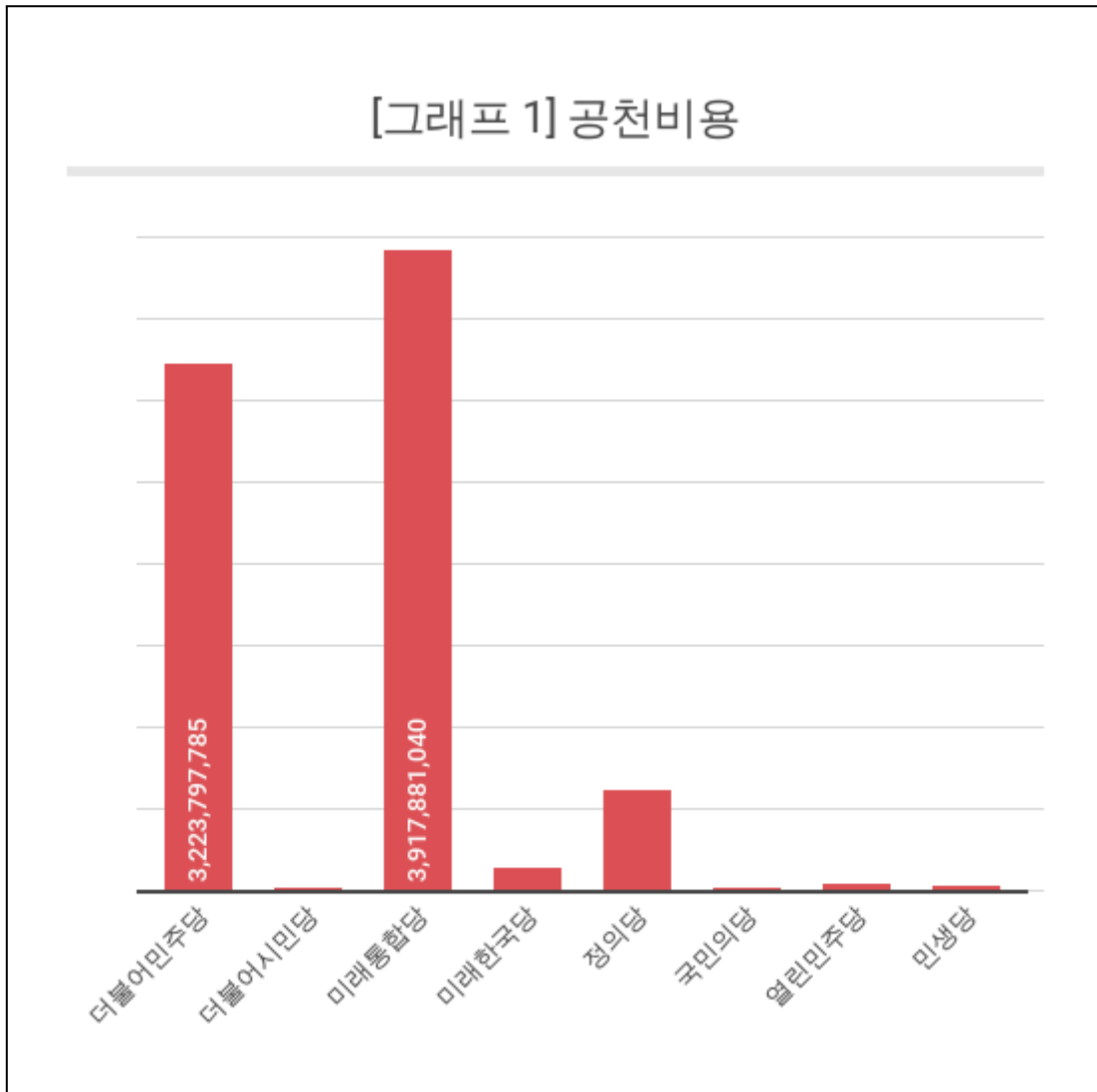
더불어시민당(1억5천만원, 30명), 정의당 (1억4천500만원, 29명), 국민의당(1억3천만원, 26명), 열린민주당(8천500만원, 17명)순임.

- 각 지역 시도당에 지급하는 **하급당부보조**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5.56%)이고, 미래통합당 (21.71%), 정의당(19.20%), 민생당(9.03%)순임. 반면 열린민주당은 하급당부보조에 어떤 지출도 하지 않음.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자를 지원할 시도당에 별도의 지출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하급당부보조 비율이 가장 낮았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0.15%)을 비롯해 미래한국당(0.23%), 국민의당(2.54%)또한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에만 임했기 때문임.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지출총액 대비 6.97%(18억원)를 빌려줌(**차용금**).
- 주요 정당의 수입부 중 유일하게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로 5천9백만원의 수입이 있었던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로 약 9천509만원을 지출함.
- 미래통합당의 지출부 중 지출 목적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기재된 **판독 불가** 내역의 비율은 1.4%임. 이는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회계보고서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며,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사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제공해 식별이 불가능했음.
-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선거비용이라 간주하는 것은 **공천과 선거운동 비용**임. 이에 아래에서는 공천과 선거운동 항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봄. 특히 선거운동 비용에 대해서는△**홍보**, △**선거공보**, △**선거전략**, △**선거기구**, △**정책/공약**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해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함. 또한 각 정당이 지출했지만 선관위로부터 보전받거나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례도 분석함.

[표 7] 참여연대 재분류에 따른 8개 주요 정당 지출액 (단위 : 원)

재분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정당활동	221,881,185 (0.86%)	7,050,000 (0.15%)	368,621,900 (2.04%)	1,800,000 (0.03%)
사무실 운영	4,269,155,263 (16.53%)	417,055,523 (8.59%)	4,816,812,059 (26.65%)	512,610,271 (7.98%)
공천	3,223,797,785 (12.48%)	10,902,160 (0.22%)	3,917,881,040 (21.68%)	140,076,900 (2.18%)
선거운동	3,933,082,658 (15.23%)	4,208,154,781 (86.63%)	3,314,779,856 (18.34%)	5,234,912,300 (81.47%)
선거지원금	5,277,740,980 (20.43%)		1,100,000,000 (6.09%)	
기탁금		150,000,000 (3.09%)		195,000,000 (3.03%)
하급당부보조	6,603,534,157 (25.56%)	7,210,000 (0.15%)	3,923,814,446 (21.71%)	15,000,000 (0.23%)
차용금	1,800,000,000 (6.97%)			
비교섭단체연구용역				
판독불가			252,557,834 (1.40%)	
기타	503,159,510 (1.95%)	57,000,000 (1.17%)	380,359,380 (2.10%)	326,000,000 (5.07%)
합계	25,832,351,538 (100%)	4,857,372,464 (100%)	18,074,826,515 (100%)	6,425,399,471 (100%)
재분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정당활동	77,328,474 (0.57%)	25,922,990 (0.54%)	18,248,000 (0.41%)	15,964,462 (0.23%)
사무실 운영	1,767,379,221 (12.97%)	131,757,545 (2.74%)	133,858,666 (3%)	1,130,328,615 (16.19%)
공천	607,535,704 (4.46%)	13,468,194 (0.28%)	32,320,130 (0.72%)	23,029,826 (0.33%)
선거운동	5,523,244,263 (40.52%)	4,389,232,257 (91.20%)	4,070,813,477 (91.29%)	2,157,803,478 (30.91%)
선거지원금	2,798,000,000 (20.53%)			2,839,000,000 (40.67%)
기탁금	145,000,000 (1.06%)	130,000,000 (2.70%)	85,000,000 (1.91%)	185,000,000 (2.65%)
하급당부보조	2,617,813,750 (19.20%)	122,142,060 (2.54%)		630,403,747 (9.03%)
차용금				
비교섭단체연구용역	95,095,820 (0.70%)			
판독불가				
기타			118,880,000 (2.67%)	-351,880 (-0.01%)
합계	13,631,397,232 (100%)	4,812,523,046 (100%)	4,459,120,273 (100%)	6,981,178,248 (100%)

1) 공천 비용⁶



[그래프 1] 공천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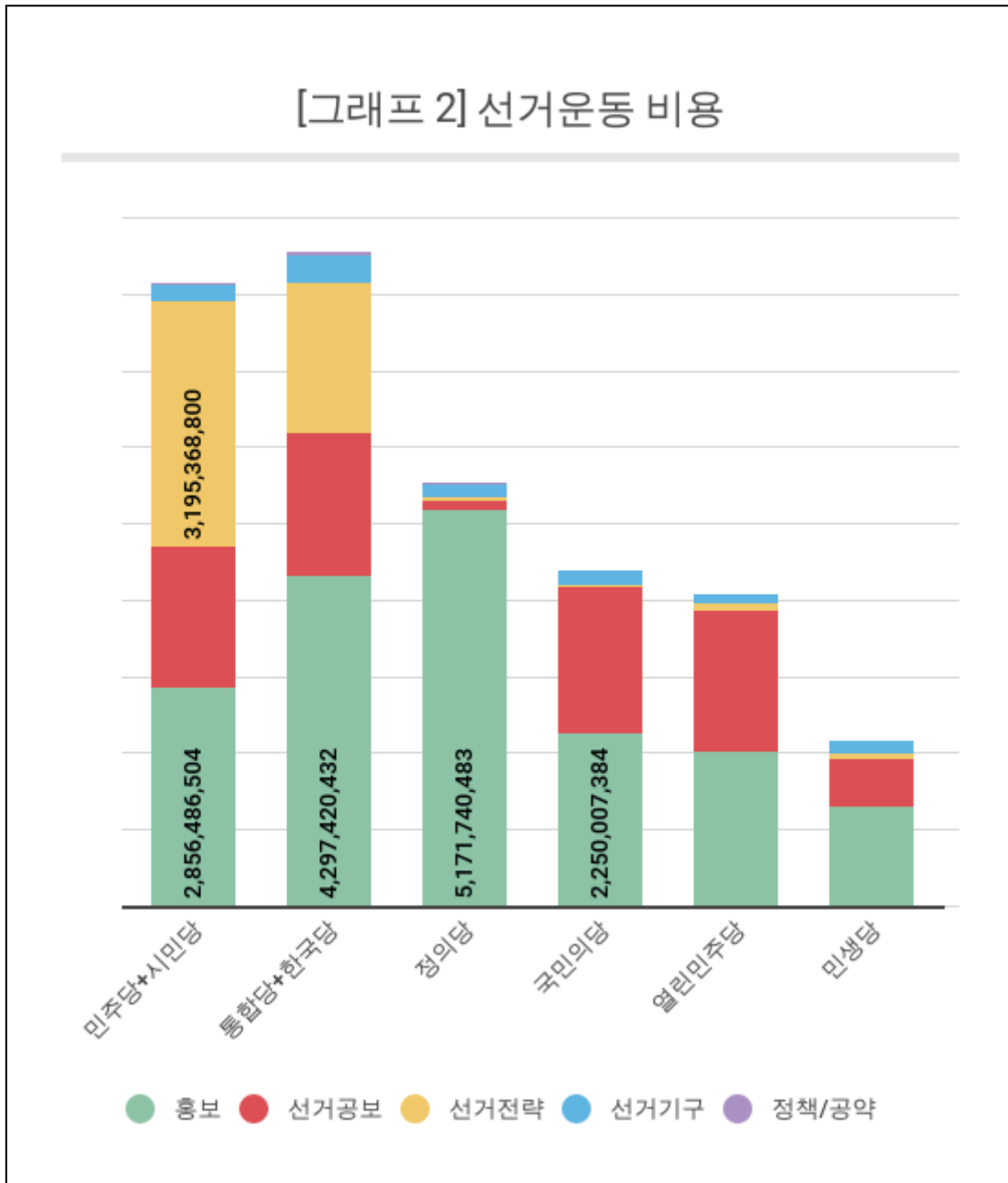
- 공직선거법 120조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분류됨. 그러나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 또한 선거 시기 유권자 판단에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므로 공천 비용 항목을 재분류함.
- 21대 총선 전에 창당 및 합당된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비용은, 253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다수의 후보자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현저한 차이를 보임.
- 참여연대가 살펴본 8개 주요 정당이 공천에 사용한 총 금액과 내역은 다음과 같음. 지역구 후보만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경선투표 등에 약 30억2천522만원, 공직선거후보자

⁶ 그래프는 [여기](#)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

검증위원회 및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관련 기구 운영 등으로 약 1억9천857만원을 포함해 총 약 32억2천379만원을 지출함.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780만원, 심사자료 제작비로 약 260만원, 회의 진행을 위한 노트북 렌탈비용으로 50만원, 총 약 1천90만원 가량의 최저 비용을 지급함. 두 정당이 21대 총선 후보자 및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약 32억3천470만원임.

- **미래통합당**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관련 비용으로 약 34억99만원, 후보면접 등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관련 비용으로 약 4억8천457만원, 공천관련 기구 운영비로 약 3천231만원, 총 약 39억1천788만원을 사용함. **미래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 활동비(회의 수당 포함) 약 1억 3천만원과 식비 약 430만원, 공천자료 인쇄비용 약 241만원, 공관위 기자회견 관련 비용 306만원, 총 약 1억4천7만원을 지급함. 두 정당이 21대 총선 후보자 및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약 40억5천795만원임.
- 지역구 후보 및 당원이 아닌 시민들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경선 방식을 선택한 **정의당**은 정책검증대회(JED) 운영 및 홍보비, 시스템 구축 비용,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비, 당내경선 공보물 제작비 및 우편발송비 등을 포함해 총 약 6억753만원을 지급함.
-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ARS 전화 투표 조사 비용과 공천관련 기구 운영비 등을 포함해 약 1천347만원을 지출함.
-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열린공천선거인단’을 모집했던 **열린민주당**은 예비후보자 면접 장소 대관료, ‘열린공천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서버 개발과 비례 후보자 순위 결정을 위한 투표 비용 등을 포함해 총 약 3천232만원을 지출함.
- **민생당**은 공천관리위원회 및 인재영입위원회 업무를 위한 간담회 등을 포함해 약 2천303만원을 지출함.

2) 선거운동 비용



[그래프 2] 선거운동 비용

홍보 :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67조), 어깨띠 등 소품(68조), 신문광고(69조), 방송광고(70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71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72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79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81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8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82조의4), 인터넷광고(82조의7) 등, 후보자 임명장과 꽃다발, 정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관련 비용, 정기적,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벗어나 선거운동 중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참여연대가 판단한 비용

선거공보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공보(65조) 도안, 기획, 자문, 제작비 및 운송비(미지급금 포함)

선거전략 : 여론조사, 여론조사용 가상번호 확보 비용, 정세 분석 컨설팅 등

선거기구 : 선거관련 기구(중앙선대위, 부문별 선대위 등) 운영비, 선거기구 참여 당직자의 출장비와 수당, 유급선거사무원 등

정책/공약 : 현안(코로나19, 텔레그램n번방 등)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관련되거나 정책이나 공약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 관련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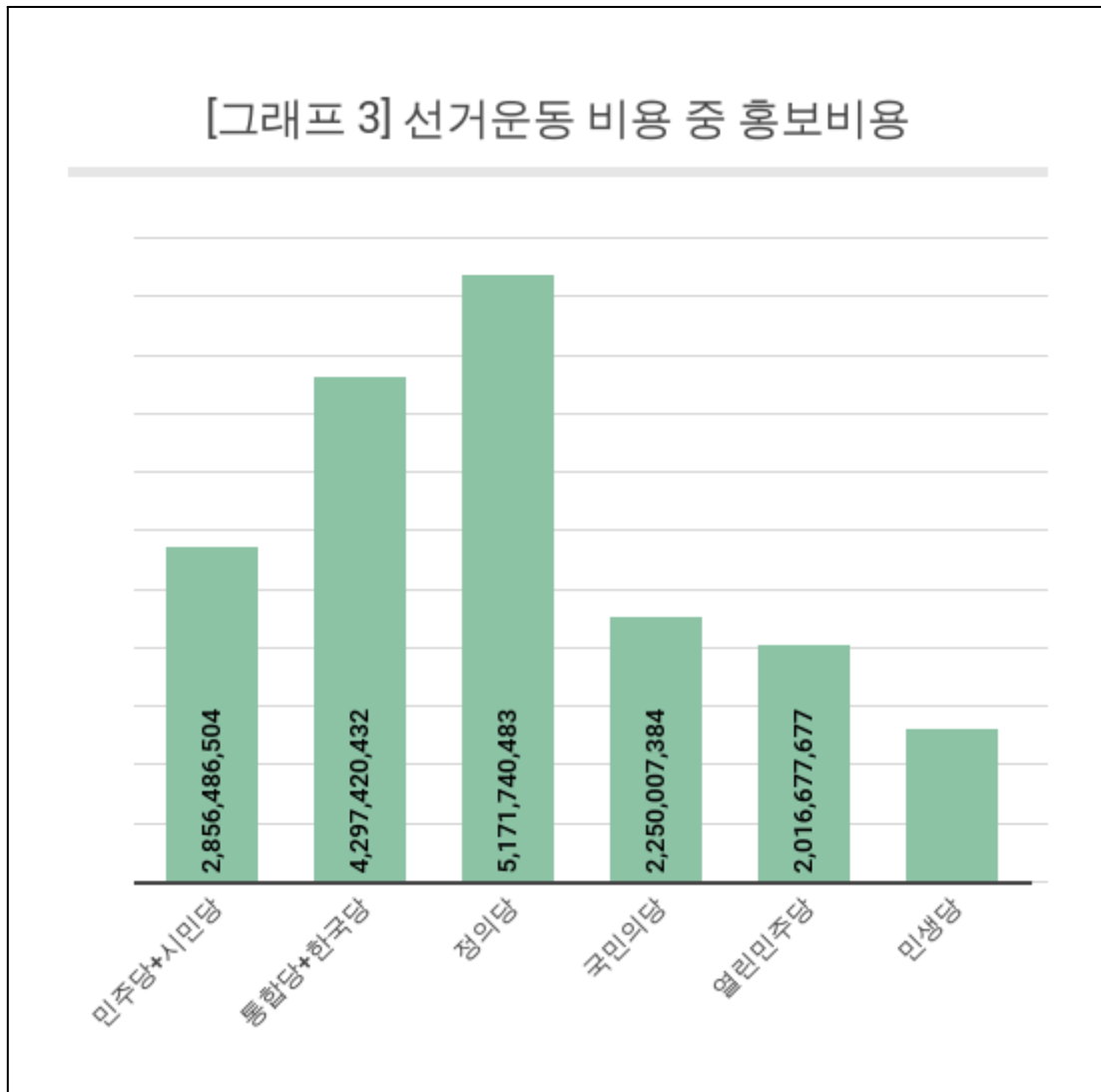
- 참여연대는 각 정당들의 지출 내역 중 홍보, 선거공보, 선거전략, 선거기구, 정책/공약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선거운동 비용으로 살펴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음.
- **홍보**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정의당(93.64%)임. 그 다음으로 높은 정당은 민생당(60.43%), 미래한국당(60.40%), 더불어민주당(55.31%), 국민의당(51.26%), 열린민주당(49.54%), 미래통합당(34.25%), 더불어민주당(13.45%) 순이었음. 다만,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으로 보면 50.26%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으로 보면 35.09%로 8개 주요 정당 모두 정당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에 비중을 높이 두고 21대 총선을 치름.
- **선거공보**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열린민주당(45.06%)으로,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43.76%), 국민의당(43.56%), 미래한국당(36.01%), 민생당(27.78%), 정의당(2.11%), 더불어민주당(0.02%) 순임. 미래통합당은 선거공보로 지출한 내역이 없음.
- **선거전략**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두 정당은 더불어민주당(81.24%)과 미래통합당(57.66%)이었음. 그 다음은 민생당(3.66%), 열린민주당(2.65%), 국민의당(0.83%), 미래한국당(0.74%), 정의당(0.73%) 순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전략 비용 지출이 없음.
- **선거기구**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민생당(7.93%)임. 그 다음은 미래통합당(6.64%), 더불어민주당(4.49%), 국민의당(4.47%), 정의당(3.33%), 미래한국당(2.85%), 열린민주당(2.60%), 더불어민주당(0.93%) 순임.
- **정책/공약**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미래통합당(1.45%)임.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0.80%), 정의당(0.20%), 민생당(0.19%), 열린민주당(0.15%)임.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석 확보만을 목적으로 창당해 비판을 받았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을 비롯 국민의당 또한 정책/공약으로 지출한 비용이 없음.
- 더불어민주당은 8개 주요 정당 중 선거전략 비용, 즉 여론조사 및 정세분석에 가장 많은 비용(81.24%)을 지급하고 홍보 비용(13.45%)을 가장 적게 지급했으나, 정의당은 홍보비용(93.64%)에 가장 많은 비용을, 선거전략 비용(0.73%)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지급함.

[표 8] 선거운동 비용

정당	합계	홍보	선거공보	선거전략	선거기구	정책/공약
더불어민주당	3,933,082,658 (100%)	528,955,041 (13.45%)	602,300 (0.02%)	3,195,368,800 (81.24%)	176,758,617 (4.49%)	31,397,900 (0.80%)
더불어시민당	4,208,154,781 (100%)	2,327,531,463 (55.31%)	1,841,422,378 (43.76%)		39,200,940 (0.93%)	
소계	8,141,237,439 (100%)	2,856,486,504 (35.09%)	1,842,024,678 (22.63%)	3,195,368,800 (39.25%)	215,959,557 (2.65%)	31,397,900 (0.39%)
미래통합당	3,314,779,856 (100%)	1,135,473,332 (34.25%)		1,911,354,100 (57.66%)	219,952,424 (6.64%)	48,000,000 (1.45%)
미래한국당	5,234,912,300 (100%)	3,161,947,100 (60.40%)	1,885,244,200 (36.01%)	38,500,000 (0.74%)	149,221,000 (2.85%)	
소계	8,549,692,156 (100%)	4,297,420,432 (50.26%)	1,885,244,200 (22.05%)	1,949,854,100 (22.81%)	369,173,424 (4.32%)	48,000,000 (0.56%)
정의당	5,523,244,263 (100%)	5,171,740,483 (93.64%)	116,587,750 (2.11%)	40,322,447 (0.73%)	183,664,463 (3.33%)	10,929,120 (0.20%)
국민의당	4,389,232,257 (100%)	2,250,007,384 (51.26%)	1,906,512,166 (43.44%)	36,300,000 (0.83%)	196,412,707 (4.47%)	
열린민주당	4,070,813,477 (100%)	2,016,677,677 (49.54%)	1,834,491,093 (45.06%)	107,800,000 (2.65%)	105,920,650 (2.60%)	5,924,057 (0.15%)
민생당	2,157,803,478 (100%)	1,304,065,828 (60.43%)	599,346,220 (27.78%)	79,049,438 (3.66%)	171,136,702 (7.93%)	4,205,290 (0.19%)
합계	32,832,023,070	17,896,398,308	8,189,706,107	5,408,694,785	1,242,267,503	100,456,367

* 지출 내역만으로 재분류하여 실제 선거운동 비용에 사용했는지 여부와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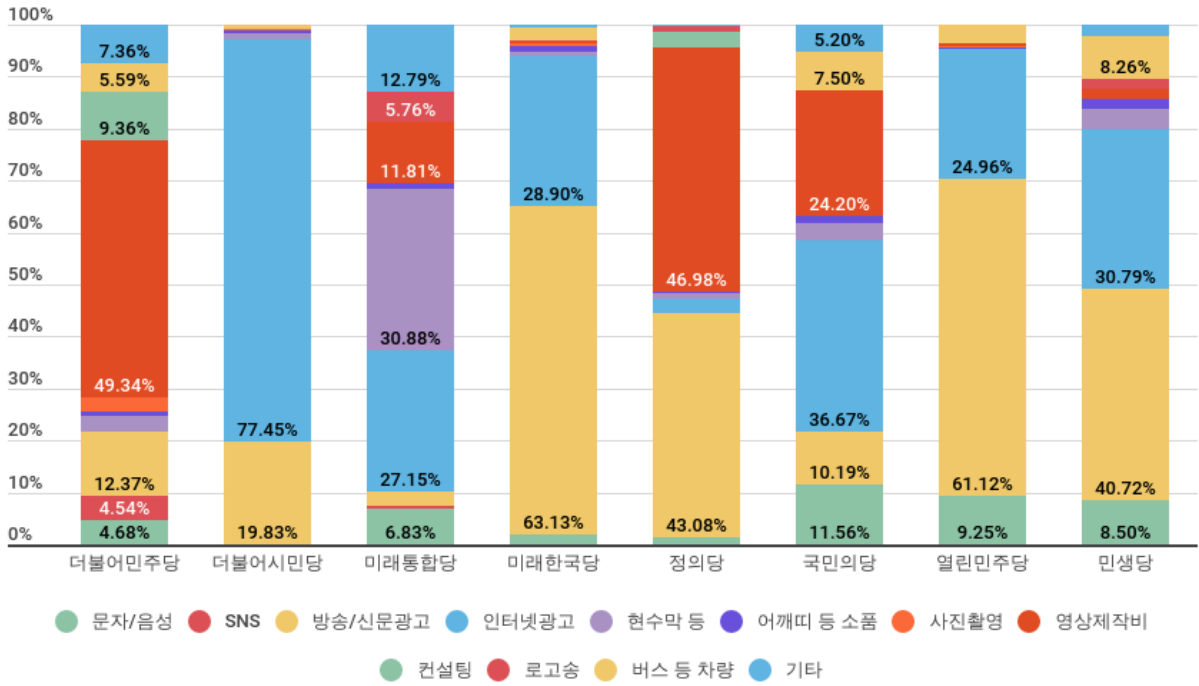
(1) 홍보 비용



[그래프 3] 선거운동 비용 중 홍보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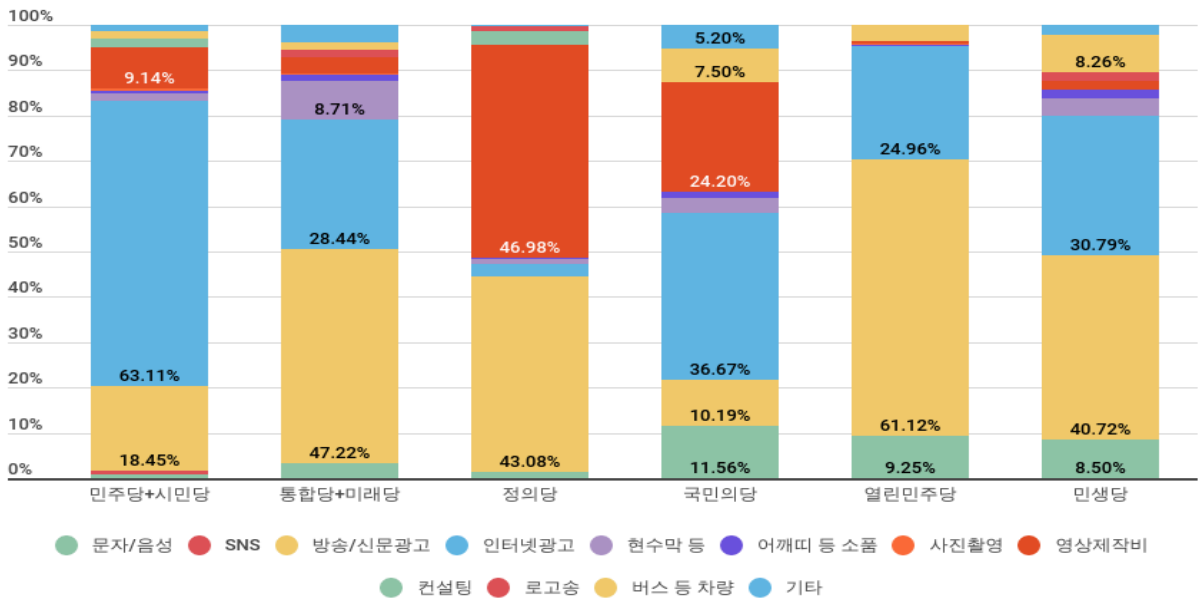
- 선거운동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홍보 비용임.
-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선거운동은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의상 포함), 신문/방송(라디오 포함) 광고, 정보통신망(문자, 음성메시지 전송 및 SNS) 홍보, 인터넷 광고, 로고송 등임. 그 외에 참여연대가 포함한 선거운동 비용은 홍보 컨설팅, 후보자 사진촬영, 버스임차 및 관련 비용 등임. 기타 비용에는 당명 변경으로 인한 CI제작 및 홍보 매뉴얼 등을 포함. 주요 정당의 홍보 비용 현황은 [표 9]과 같음.

[그래프 4] 선거운동 비용 중 홍보 비용에 대한 참여연대 재분류



[그래프 4] 선거운동 비용 중 홍보 비용에 대한 참여연대 재분류

[그래프 4-1] 선거운동 비용 중 홍보 비용에 대한 참여연대 재분류



[그래프 4-1] 선거운동 비용 중 홍보 비용에 대한 참여연대 재분류(민주당+시민당, 통합당+미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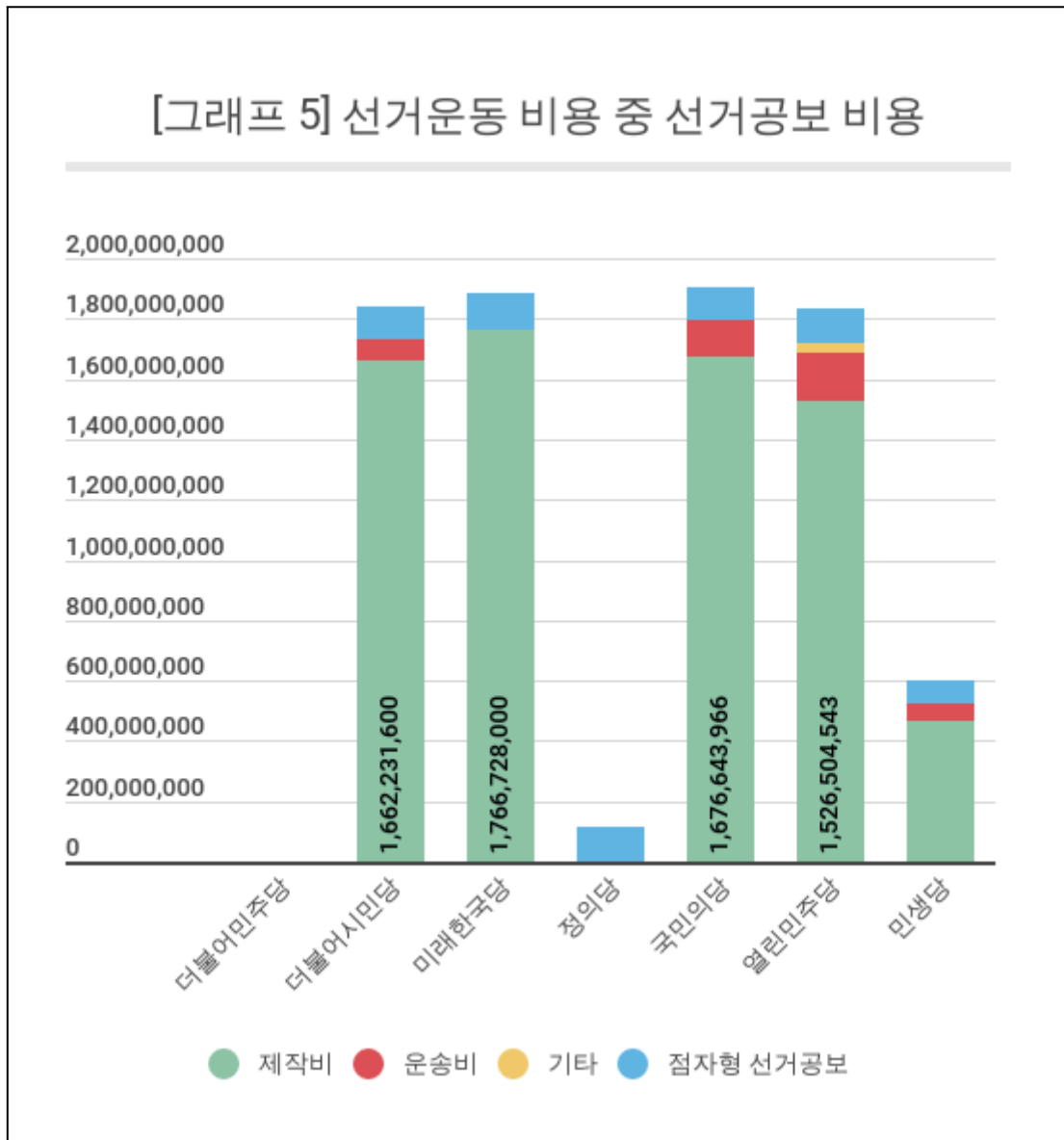
- 8개 주요 정당의 홍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더불어민주당**은 영상제작비(49.34%), **더불어시민당**은 인터넷광고(77.45%), **미래통합당**은 현수막 등(30.88%)과 인터넷광고(27.15%), **미래한국당**은 방송/신문광고(63.13%), **정의당**은 영상제작비(46.98%)와 방송/신문광고(43.08%), **국민의당**은 인터넷광고(36.67%)와 영상제작비(24.2%), **열린민주당**은 방송/신문광고(61.12%), **민생당**은 방송/신문광고(40.72%), 인터넷광고(30.79%)임. 각 정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어떤 홍보 수단을 활용했는지 보여줌.
- 일명 쌍둥이 버스 논란으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홍보용 버스 임차 및 래핑 비용, 안철수 대표의 코로나19 방역 자원봉사를 홍보한 국민의당 또한 버스 등 차량 관련 비용에 많은 비용을 지급함.
- 주요 정당의 특이한 선거운동으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선거운동인 안철수의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에 약 1억552만원을,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중심으로 출연한 핑크챌린지 제작 비용에 약 3천450만원을, **미래통합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와 신의한수 등과의 협업 등 콘텐츠 제작 비용에 약 1천760만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도 정당도 더불어 영상 및 기호홍보 영상에 660만원을 지급함.
- 다만, 정의당의 홍보 비용은 홍보 비용으로 재분류한 지출 내역 중 ‘2020년 총선 홍보물 제작 등 대행업체’에게 지급한 23억9천8백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이는 선거공보 비용으로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실제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출 내역에 기재한 대로 홍보 비용으로 포함함.
- 홍보 비용 중 문자(음성) 메시지, 방송/신문/인터넷 광고,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 사진촬영, 선거공보, 로고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에 사용한 차량 등의 비용, 선거운동기구와 관련된 비용 등은 정해진 예산과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이 보전됨. 공직선거법 제119조에 따라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

[표 9] 선거운동 비용 중 홍보 비용에 대한 참여연대 재분류

정당	문자/음성 메시지	SNS	방송/신문광고	인터넷광고	현수막 등	어깨띠 등 소품
더불어민주당	24,741,840 (4.68%)	24,000,000 (4.54%)	65,450,000 (12.37%)		16,060,000 (3.04%)	4,360,000 (0.82%)
더불어시민당	1,740,000 (0.07%)		461,497,630 (19.83%)	1,802,779,000 (77.45%)	25,530,200 (1.10%)	11,946,748 (0.51%)
소계	26,481,840 (0.93%)	24,000,000 (0.84%)	526,947,630 (18.45%)	1,802,779,000 (63.11%)	41,590,200 (1.46%)	16,306,748 (0.57%)
미래통합당	77,582,912 (6.83%)	5,940,000 (0.52%)	33,165,000 (2.92%)	308,310,000 (27.15%)	350,582,500 (30.88%)	15,154,000 (1.33%)
미래한국당	60,000,000 (1.90%)		1,996,232,450 (63.13%)	913,734,000 (28.90%)	23,895,000 (0.76%)	40,979,500 (1.30%)
소계	137,582,912 (3.20%)	5,940,000 (0.14%)	2,029,397,450 (47.22%)	1,222,044,000 (28.44%)	374,477,500 (8.71%)	56,133,500 (1.31%)
정의당	71,562,890 (1.38%)	1,000,000 (0.02%)	2,228,184,420 (43.08%)	142,000,000 (2.75%)	54,148,400 (1.05%)	13,209,500 (0.26%)
국민의당	260,044,766 (11.56%)		229,314,800 (10.19%)	825,000,000 (36.67%)	78,099,070 (3.47%)	27,128,880 (1.21%)
열린민주당	186,471,647 (9.25%)		1,232,497,530 (61.12%)	503,377,800 (24.96%)	311,700 (0.02%)	2,964,000 (0.15%)
민생당	110,865,446 (8.50%)		530,979,592 (40.72%)	401,500,000 (30.79%)	48,351,600 (3.71%)	27,530,560 (2.11%)
정당	사진촬영	영상제작비	컨설팅	로고송	버스 등 차량	기타
더불어민주당	15,400,000 (2.91%)	260,970,000 (49.34%)	49,500,000 (9.36%)		29,554,145 (5.59%)	38,919,056 (7.36%)
더불어시민당	3,300,000 (0.14%)			1,100,000 (0.05%)	17,478,090 (0.75%)	2,159,795 (0.09%)
소계	18,700,000 (0.65%)	260,970,000 (9.14%)	49,500,000 (1.73%)	1,100,000 (0.04%)	47,032,235 (1.65%)	41,078,851 (1.44%)
미래통합당		134,063,320 (11.81%)		65,400,000 (5.76%)		145,275,600 (12.79%)
미래한국당	14,525,000 (0.46%)	11,770,000 (0.37%)		8,300,000 (0.26%)	74,981,500 (2.37%)	17,529,650 (0.55%)
소계	14,525,000 (0.34%)	145,833,320 (3.39%)		73,700,000 (1.71%)	74,981,500 (1.74%)	162,805,250 (3.79%)
정의당	10,500 (0.00%)	2,429,721,000 (46.98%)	165,000,000 (3.19%)	46,640,000 (0.90%)		20,263,773 (0.39%)
국민의당		544,569,200 (24.20%)			168,769,000 (7.50%)	117,081,668 (5.20%)
열린민주당	9,329,500 (0.46%)	7,055,000 (0.35%)			74,670,500 (3.70%)	
민생당	168,361 (0.01%)	24,557,210 (1.88%)		24,358,800 (1.87%)	107,718,999 (8.26%)	28,035,260 (2.15%)

* 각 정당의 선거비용 중 홍보 지출 총액 대비 비율임

(2) 선거공보 비용



[그래프 5]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공보 비용

- 선거공보 비용은 선거운동 비용 중 두번째로 지출이 많았음. 선거공보 비용으로 재분류한 내역은 총선 공약집 제작비, 선거공보 제작비(점자형 공보 포함), 운송비, 인쇄업체 실사 또는 입찰 관련 비용임.
- 선거공보와 관련된 비용 중 기획/도안료, 제작비, 운송비와 같이 대부분의 항목이 중앙선관위가 정한 제출 수량, 금액에 따라 보전되고 있음. 점자형 선거공보는 선거비용으로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임.
-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21대 총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공보가 아닌 기타 항목으로 6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위성정당 창당 결정 전 비례대표 공보물과 관련된 출장비였음.

- 선거공보 비용 중 **미래한국당**은 ‘점자형 공보물 잔금’만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혹은 선납금에 대한 내역이 없음. 합당 전 정당인 자유한국당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찾을 수 없음.
- 앞서 **정의당**의 홍보 비용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재분류한 지출 내역 중 ‘2020년 총선 홍보물 제작 등 대행업체’에게 지급한 23억9천8백만원을 정의당의 홍보 비용으로 포함함. 이는 선거공보 비용으로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실제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출 내역에 기재한 대로 홍보 비용으로 포함되어 선거공보 비용이 타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표 10]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공보 비용

	선거공보 합계	제작비	운송비	기타	점자형 선거공보
더불어민주당	602,300 (100%)			602,300 (100%)	
더불어시민당	1,841,422,378 (100%)	1,615,000,000 (87.70%)	118,079,000 (6.41%)		108,343,378 (5.88%)
소계	1,842,024,678 (100%)	1,662,231,600 (90.24%)	70,847,400 (3.85%)	602,300 (0.03%)	108,343,378 (5.88%)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1,885,244,200 (100%)	1,766,728,000 (93.71%)			118,516,200 (6.29%)
소계	1,885,244,200 (100%)	1,766,728,000 (93.71%)			118,516,200 (6.29%)
정의당	116,587,750 (100%)				116,587,750 (100%)
국민의당	1,906,512,166 (100%)	1,676,643,966 (87.94%)	116,650,000 (6.12%)		113,218,200 (5.94%)
열린민주당	1,834,491,093 (100%)	1,526,504,543 (83.21%)	161,600,000 (8.81%)	30,813,200 (1.68%)	115,573,350 (6.30%)
민생당	599,346,220 (100%)	466,510,000 (77.84%)	58,300,000 (9.73%)		74,536,220 (12.44%)

(3) 선거전략 비용



[그래프 6]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전략 비용

- 선거전략 비용은 선거운동 비용 중 세번째로 지출이 많았으며, 정세 분석을 위한 컨설팅과 여론조사 비용,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확보 비용 등이 해당함.
- 선거운동 비용 중 정세분석에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세분석과 관련해 전국적, 지역구 정치지형 조사, 총선 슬로건, 온라인 동향, 유권자 분석 등 다양한 유형의 조사 지출 내역으로 53건을 포함 총 약 31억9천537만원을 지출함.
-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선거 정세분석을 위해 약 5회 이상의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하고, 정치자문 및 총선전략 수립 여론조사를 진행함.

- **더불어시민당**은 정세분석이나 여론조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고, **미래한국당**은 정세분석 여론조사 1회를, **정의당**은 여론조사 가상번호 확보 지출 내역으로 총 57건을 보고함.
- 더불어시민당은 선거전략 비용 지출이 없고, 미래한국당 또한 선거전략 비용 내역이 ‘여론조사(판독분석) 비용’ 1건임을 고려할 때, 두 위성정당의 선거전략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부담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참고로 참여연대는 **미래통합당**의 지출 내역 중 30건, 총 약 2억5천255만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판독불가로 분류한 바 있음. 지출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지출처가 통신사인 것을 보면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확보비용’으로 보이나, 실제 지출 내역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아래 [표 11]에는 판독불가 내역은 제외함. **열린민주당**은 ‘투표독려 음성메시지 발송 및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내역으로 단 한 건을 지급, 지급 내역을 분류할 수 없어 선거전략 비용으로 포함함.

[표 11]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전략 비용

	선거전략 비용 합계	정세분석	여론조사(가상번호)	기타
더불어민주당	3,195,368,800 (100%)	2,577,284,000 (80.66%)	610,819,800 (19.12%)	7,265,000 (0.23%)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1,911,354,100 (100%)	1,729,100,000 (90.46%)	182,254,100 (9.54%)	
미래한국당	38,500,000 (100%)	38,500,000 (100%)		
정의당	40,322,447 (100%)	2,750,000 (6.82%)	37,572,447 (93.18%)	
국민의당	36,300,000 (100%)	36,300,000 (100%)		
열린민주당	107,800,000 (100%)	107,800,000 (100%)		
민생당	79,049,438 (100%)	24,171,300 (30.58%)	54,878,138 (69.42%)	

(4) 선거기구 비용

- 선거운동 비용 중 네 번째로 지출이 많았던 선거기구 비용은 선거관련 기구(중앙선대위, 부문별 선대위 등) 운영비, 선거기구 참여 당직자의 출장비와 수당,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른 유급선거사무원 등을 포함함. 선거를 앞두고 8개 주요 정당은 ‘선거대책본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선거 대응 기구를 출범시킴.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기구 비용에 총 약 1억7천756만원을 지출, 참여연대 재분류에 따른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기구 비용 비율은 4.49%임. 가장 큰 지출은 ‘제21대 총선 지원을 위한 파견당직자 출장비’로 6회 지급, 총 약 6천886만원을 지출함.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대상 기본교육’과 관련해 2천364만원, ‘노동존중실천단’ 운영 및 간담회비로 약 600만원, 상근 부대변인 3인에게 총 약 298만원 등을 지급함. **더불어시민당**은 선거기구 비용에 총 약 3천920만원을 지출,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기구 비용 비율은 0.93%임. 유급선거사무원 39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2천881만원을 지출하고, 당 지도부 및 당직자의 행사 참석을 위한 항공료로 약 1천38만원을 지출함. 비례대표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참가했지만, 선거 대응 기구 운영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으로 추측됨.
- **미래통합당**은 선거기구 비용에 총 약 2억1천995만원을 지출,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기구 비용 비율은 6.64%임. 가장 큰 지출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상 근무 체제 관련 사무처 당직자 초과 근무 수당 자금의 건’으로 9천486만원임. 선거대책위원장 ‘박00’, ‘신00’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각각 총 1천만원을 지급함. 선대위원장은 활동비 및 식비 등으로 약 5천609만원을 지출함. 선거대책위원인 조00, 천00에게 활동비로 200만원씩 지급한 내역 등을 포함함. **미래한국당**은 선거기구 비용에 총 약 1억4천922만원을 지출,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기구 비용 비율은 2.85%임. 가장 큰 지출은 선거대책위원회 주요당직자 27명에게 총 8천100만원을 지급한 것임. 남00 대변인에게 200만원, 정책자문위원장에게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내역을 포함함.
- **정의당**은 선거기구 비용에 총 약 1억8천366만원을 지출,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기구 비용 비율은 3.33%임. 가장 큰 지출은 138명의 유급 당직자 실비로 7천176만원을 지출한 것임. 비례대표 후보 유세 진행경비로 2천16만원, 출마자 지원 출장비로 약 687만원, 총선 특별지급여로 14명에게 520만원, 외부자문위원 면담 비용 약 294만원 등을 포함함.
- **국민의당**은 선거기구 비용에 총 약 1억9천641만원을 지출,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기구 비용 비율은 4.47%임. 가장 큰 지출은 유급선거사무원 수당으로 1억1천118만원을 지급한 것임. ‘단기인건비’ 총 약 7천945만원을 포함, 약 1억9천63만원을 수당비로 지출함. 총선 준비 간담회 지출 내역을 포함함.
- **열린민주당**은 선거기구 비용에 총 약 1억592만원을 지출,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기구 비용 비율은 2.6%임. 이 중 가장 큰 지출 내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 임차비용 및 관리비’로 중앙보훈회관관리협의회에 약 4천608만원을 지출함. 선거대책위 유세본부 운영경비로 약 3천40만원을 지출함. 10명의 유급선거사무원에게 약 1천980만원을 지급했고, 후보자의 대전지역 간담회 대관료 150만원 등이 포함함.

- **민생당**은 8개 주요 정당 중 선거기구 비용에 가장 높은 비율인 7.93%를 지출함. 세부 지출 내역 중 가장 큰 지출 내역은 ‘당대표 기자간담회(국장, 사무처 당직자 등)’에 100만원을 지출함. 그 외 선거대책본부의 총선 집중 유세나 비례대표 후보자 관련 간담회를 포함함.

(5) 정책/공약 비용

- 선거운동 비용 중 가장 지출이 적었던 것은 정책/공약 비용임. 정책/공약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현안(코로나19, 텔레그램n번방 등)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관련되거나 정책이나 공약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 관련 비용임.
- 정책/공약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미래통합당(1.45%)임.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0.80%), 정의당(0.20%), 민생당(0.19%), 열린민주당(0.15%) 순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책/공약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이 없음.
-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 비용은 제21대 총선 공약집 제작비로 2천500만원,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 정책 관련 간담회 및 전진대회’ 비용으로 약 640만원을 포함 총 약 3천197만원 등임. **더불어시민당**은 정책/공약 비용 지출이 없음. **미래통합당** 역시 정책/공약 비용은 제21대 총선 공약집 제작비 4천600만원, 연합뉴스로부터 ‘정책자료구입’ 200만원을 포함, 총 4천800만원임. **미래한국당** 역시 정책/공약 비용 지출이 없음.
- 그나마 지출한 정책/공약 비용은 총선마다 으레 제작하는 ‘21대 총선 공약집 제작’ 뿐이며,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비나 연구비 지출 등은 찾아볼 수 없음.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한 꼼수로 창당된 두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은 정책/공약을 위해서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음.
- **정의당**은 언론미디어, 교육, 복지, 그린뉴딜 경제, 지역형 그린뉴딜, 균형발전, 탈핵, 이주민, 청년금융, 전통시장법 개정안 등 가장 다양한 분야에 정책/공약 비용을 지출했음. 정책자문위원 면담 등을 포함해 총 약 1천93만원을 정책/공약 비용으로 지출함.
- **열린민주당**은 정책/공약 개발보다 공약 순위 결정을 위한 투표 개발로 약 522만원, ‘열린공약 캐스팅’ 문자 발송비로 70만원, 총 약 592만원을 정책/공약 비용으로 지출함.
- **민생당**은 총선 공약 홍보를 위해 약 147만원, 정책 및 공약 관련 간담회에 약 110만원, 가슴기 살균제 피해 토론회에 약 77만원, 코로나 대응을 위해 약 40만원 등을 포함 총 약 420만원을 지출함.

3)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보전 및 국가 부담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국가는 ‘선거비용’을 보전하거나 정해진 항목을 부담하도록 함. ‘보전’이란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태어 주는 것을 뜻함. 회계보고서상 ‘선거비용’ 항목으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 ‘부담’이란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관계 없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실비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말함.
- 보전 비용은 △후보자 및 비례대표후보 추천 정당의 법정홍보물(후보자 사진,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명함 등),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위한 차량/앰프/스피커/마이크, 로고송, 후보자등 등의 방송연설,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발송 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 △어깨띠 및 소품(의상 포함), △신문/방송 광고, 인터넷 광고 등임.
- 각 정당들의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청구 항목과 금액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2020년 6월 12일,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이 청구한 21대 총선 보전 및 부담비용 중 공제금액 제한 비용 지급 총액을 공개함. 보전비용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미래한국당(약 47억)이었고, 그 다음은 정의당(약 46억), 더불어민주당(약 39억), 국민의당(약 35억), 열린민주당(약 34억)순임. 민생당은 당선인이 없고 득표율도 15%를 넘기지 않아 보전비용을 지급받지 못함.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의원을 공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지출한 선거비용이 없고 이에 따라 보전 비용, 국가부담 비용도 없음. 반면 두 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출현한 더불어민주당은 38억9천617만원과 1억834만원을, 미래한국당은 47억576만원과 1억1천764만원을 보전비용과 부담비용을 지급받음. 두 위성정당에게 지급된 총 비용은 88억2천791만원(8,827,908,000)에 달함.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에게 지급될 보전비용과 부담비용은 흡수합당 후 존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수령함.
- 중앙선관위가 12개 정당에게 선거보조금으로 총 450억을 지급한 가운데, 당선인이 있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인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244억의 세금을 들여 다시 한 번 보전하는 것임. 2013년, 중앙선관위는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비용의 이중지급 문제의 대안으로,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자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⁷.

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13.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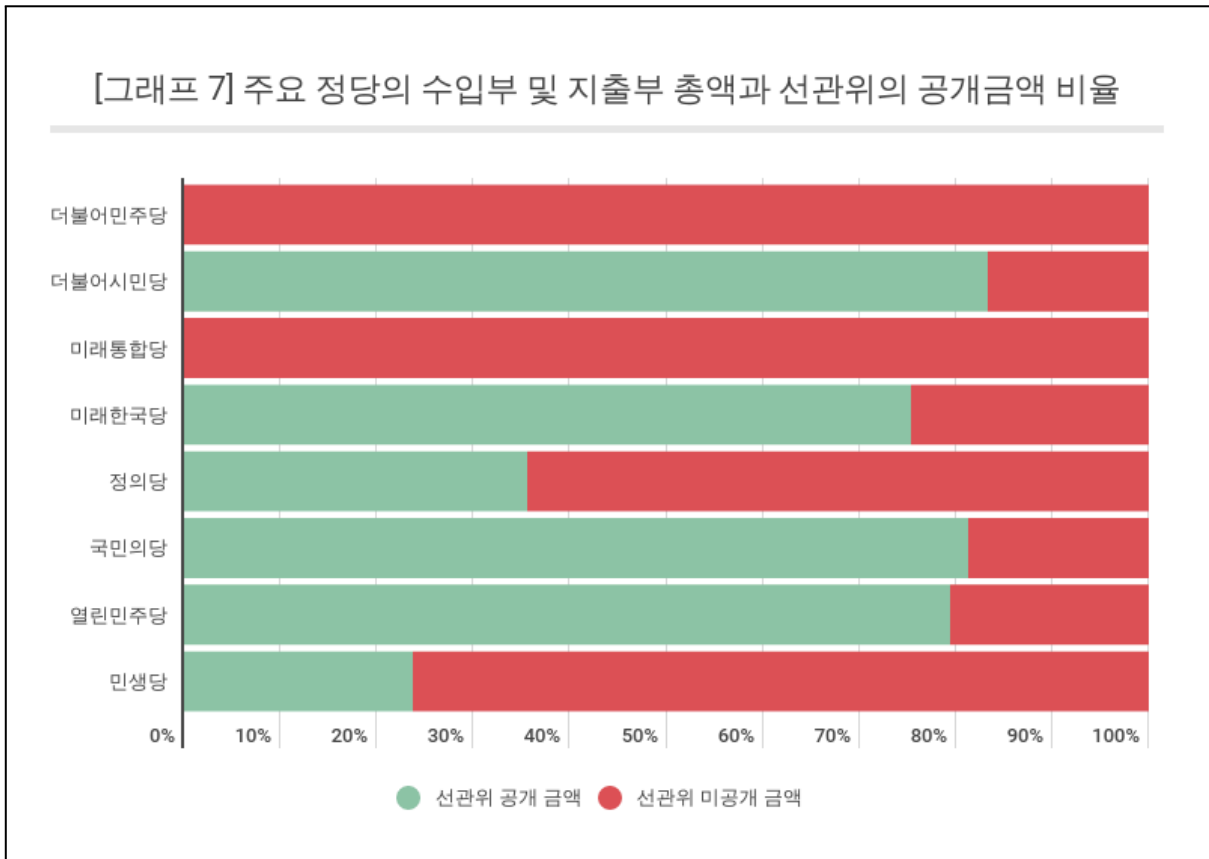
[표 12] 21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 및 국가 부담 비용 (2020. 6. 12. 현재)

구분	회계보고서 상 선거운동 비용	보전비용 청구액	보전비용 지급액	부담비용 청구액	부담비용 지급액
더불어민주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더불어시민당	4,047,166,818	4,047,167,000	3,896,165,000	108,343,000	108,343,000
미래통합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래한국당	4,843,660,772	4,843,661,000	4,705,762,000	118,586,000	117,638,000
정의당	4,855,528,450	4,855,770,000	4,657,197,000	118,128,000	118,128,000
국민의당	3,911,478,770	2,890,432,000	3,583,578,000	113,218,000	113,218,000
열린민주당	3,544,314,697	3,544,314,000	3,444,520,000	115,573,000	115,573,000
민생당	1,654,668,01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20.6.12.) <https://bit.ly/2G4a61K>

3. 특이사항

1)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과목만 공개



[그래프 7] 주요 정당의 수입부 및 지출부 총액과 선관위의 공개금액 비율

-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이 규정하는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 과목의 지출내역임. 그러나 주요 정당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살펴보면 실제 각 정당은 선거비용 과목 뿐만 아니라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그 밖의 경비 과목 등에서 통상적인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비용 과목만 공개하기 때문에 정당마다 공개하는 내역 또한 천차만별임.
- [표 13]에서 볼 수 있듯, 열람기간 동안 각 정당의 수입부는 전부 공개되지 않았고, 지출부 중 공개된 내역은 공개 대상인 ‘선거비용’ 과목 뿐임. 지출부 대비 선거비용 과목의 공개 비율이 제일 낮은 정당은 민생당으로 단 23.7%였고, 정의당은 35.97%, 미래한국당은 75.38%, 열린민주당은 79.48%, 국민의당은 81.28%, 더불어민주당은 83.32%임.
- 열람기간 동안 선거비용 과목의 지출내역 만을 공개해 유권자는 각 정당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출한 정치자금의 규모와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없음. 선거비용 뿐 아니라 정당의 회계보고서 전체 공개를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내역은 전체 공개가 되어야 함.

[표 13] 주요 정당의 수입부 및 지출부 총액과 선관위의 공개금액 비율 (단위: 원)

정당	수입부 총액	선관위 공개금액 (%)	지출부 총액	선관위 공개금액 (%)
더불어민주당	34,052,091,202 (100%)	0 (0%)	25,832,351,538 (100%)	0 (0%)
더불어시민당	4,457,213,370 (100%)	0 (0%)	4,857,372,464 (100%)	4,047,166,818 (83.32%)
미래통합당	23,618,124,209 (100%)	0 (0%)	18,074,826,515 (100%)	0 (0%)
미래한국당	8,364,007,827 (100%)	0 (0%)	6,425,399,471 (100%)	4,843,660,772 (75.38%)
정의당	9,758,880,494 (100%)	0 (0%)	13,631,397,232 (100%)	4,855,528,450 (35.97%)
국민의당	3,867,550,159 (100%)	0 (0%)	4,812,523,046 (100%)	3,911,478,770 (81.28%)
열린민주당	4,809,528,411 (100%)	0 (0%)	4,459,120,273 (100%)	3,544,314,697 (79.48%)
민생당	11,441,933,815 (100%)	0 (0%)	6,981,178,248 (100%)	1,654,668,012 (23.70%)

2)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꼼수의 사회적 비용

- 이번 총선의 특징 중의 하나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했다는 것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비용은 각각 두 정당의 선거비용으로 합쳐서 보아야 할 것임.
- 참여연대 재분류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8,141,237,439원(약 81억),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 8,549,692,156원(약 85억)의 선거비용을 지출함. 이는 8개 주요 정당의 평균 선거비용인 4,104,002,884원(약 41억)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차이가 나는 규모임. 심지어 선거운동에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한 민생당의 선거운동 비용인 2,157,803,478원(약 22억)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4배로 늘어남.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하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여 21대 총선에 참여함. 두 정당은 오로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1대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한 불법·탈법적 위성 정당임. 두 위성정당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수령하고 선거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각각 흡수합당됨.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이용해 13,453,555,560원(약 134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이용해 7,434,126,670원(약 7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이중 편취함.
-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미래한국당은 약 48억, 더불어시민당은 약 39억의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받음. 이 보전/부담 비용은 합당 후 존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각각 지급되었음. 21대 선거에서 위성정당 창당은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벗어난 명분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거대양당의 예산만 확보해준 것임.

[표 14] 2020년 주요 정당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 및 선거비용 보전/부담액 (2020. 6. 12. 현재)

정당	합계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비용 보전/부담액
더불어민주당	18,782,645,710	6,491,897,310	12,290,748,400	0
더불어시민당	7,434,126,670	980,240,650	2,449,378,020	4,004,508,000
소계	26,216,772,380	7,472,137,960	14,740,126,420	4,004,508,000
미래통합당	17,705,844,850	6,156,520,030	11,549,324,820	0
미래한국당	13,453,555,560	2,506,710,500	6,123,445,060	4,823,400,000
소계	31,159,400,410	8,663,230,530	17,672,769,880	4,823,400,000
정의당	8,925,579,300	1,367,226,770	2,783,027,530	4,775,325,000
국민의당	4,035,674,080	308,200,310	30,677,770	3,696,796,000
열린민주당	3,884,660,530	293,889,760	30,677,770	3,560,093,000
민생당	9,825,816,450	1,846,158,530	7,979,657,920	0

정치자금법, 문제와 대안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치자금법 제1조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2항에서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 '3개월만, 정치자금내역의 일부만, 열람만'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현행 방식은 제대로된 공개라고 보기 어려움.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내역 공개 시기와 범위, 방식은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정치자금 공개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지 못함. 금액 오기입 등 중앙선관위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문제임.
- 정당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회계보고 등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만 확인할 수 있음. 선거 시기 유권자는 정당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구조이고 사후에도 그 접근이 매우 제한적임. 시민 누구나 언제라도 정치자금을 감시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함. 이에 다음과 같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1) 3개월만 '한시 공개' ➔ 언제나 확인 가능 '상시 공개'

-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선관위에서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공고일로부터 단 3개월만 공개함.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 중앙당이 지출한 선거비용내역을 2020년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3개월간만 공개했음.
- 열람기간 외의 공개를 금지하기 때문에 열람기간 종료 후에는 개인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함. 그러나 3개월만 공개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가 없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2) 활용 불가능 ‘이미지 공개’ ➔ 활용 가능 ‘데이터로 공개’

- 중앙선관위는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회계보고서 중 선거비용내역 사본을 스캔하여 그림 파일로 공개하되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해당 정보의 다운로드나 출력은 불가능함. 정보를 공개할 때는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제공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야 함.
- 공개되는 정보는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함. 중앙선관위가 열람만 하도록 공개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방대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쉽게 비교, 분석하거나 통계를 내기 어려움.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의 상시 공개가 이뤄진다면, 중앙선관위는 공개되는 정보를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한 형태로 공개해야 할 것임.

3) 선거비용 과목만 ‘부분 공개’ ➔ 정치자금이라면 ‘전체 공개’

- 앞서 확인되었듯, 각 정당은 선거비용 과목 뿐만 아니라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그 밖의 경비 과목 등에서 통상적인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이 지칭하는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 과목의 지출내역을 뜻함.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선거비용 공개는 적게는 1/4 (민생당 23.7%)에 불과하며 많어도 3/4(더불어시민당 83.32%) 정도로, 100% 전체가 공개되는 사례는 없었음.
- 정치자금의 전체적 흐름을 공개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하지만 열람기간 동안 선거비용 과목의 지출내역만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는 각 정당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출한 정치자금의 규모와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없음. 선거비용 뿐 아니라 정당의 회계보고서 전체 공개를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의 활동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정치자금 내역은 전체 공개가 되어야 함.

4) 선거 다 끝난 후 ‘늑장 공개’ ➔ 수입/지출 발생 직후 ‘신속 공개’

-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1월 31일, 정당의 경우 2월 15일로 연 1회 선관위에 제출하고 있음.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40일 이내 선거비용을 포함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함. 중앙선관위는 각 중앙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선거가 끝난지 48일이 지난 후에야(2020년 6월 1일) 공개했음.
- 공직선거에서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은 정당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지만 각 정당은 선거가 있는 해가 다가오면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선거를 앞서 준비하고 있음. 유권자는 선거일 전에도 선거에 필요한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각 정당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출했는지 제 때 파악하여 감시할 수 없는 상황임.
- 2015년,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지출내역을 지출(지출원인행위) 후 **7일 이내**에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냈음⁸. 정치자금을 상시 공개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정치자금 수입, 지출 원인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즉각 공개하고 원하는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정보공개 ‘청구’ ➔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 재구축

- 중앙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18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자금 공개시스템\(ecost\)](#)을 통해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한시적으로 공개한 바 있음.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비용 현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후보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었음. 그러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여 현재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함.
-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 공개는 후보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당 및 정치인,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원인이 발생한 직후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해야 함.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정치자금을 상시, 즉각 공개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시민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을 때 이를 공개하기 위한 사본 스캔, 익명 처리 소요 비용 등 행정 처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15. 2. 25.

<정치자금 공개의 해외 사례>

- 미국은 모든 정치자금 공개 대상임. 미국은 평시에 각 분기 종료 후 15일 혹은 31일 이내에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선거자금의 경우에도 신속보고를 규정하고 있음.
-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격인 연방선거위원회(FEC: Federal Election Commission)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고받은 정치자금 신고내역을 수령 후 48시간 이내(전자파일의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공개함. 연방선거위원회 홈페이지는 모든 정치자금을 공개하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가능하도록 해 정치자금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매우 용이하게 하고 있음.

[그림 1] 미국 FEC의 선거비용 공개화면 예시

Disbursements

Viewing 25,301 filtered results for:

Data type: processed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C00580100) x 2019-2020 x

Spender	Recipient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SAVOYA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SAVOYA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WINRED TECHNICAL SERVICES LLC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STRIPE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SHOPIFY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DEPARTMENT OF TREASURY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AMERICAN EXPRESS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WINRED TECHNICAL SERVICES LLC

Open image → 원본 별도 제공

Recipient information

Recipient name: WINRED TECHNICAL SERVICES LLC
 Recipient city and state: ARLINGTON, VA, 22209

Transaction information

Amount: \$57,440.12
 Disbursement date: May 29, 2020
 Report year: 2020
 Filing date:
 Description: MERCHANT FEES

Your downloads
 ✓ schedule_b-2020-07-02... **Download** x 전체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그림 2] 미국 FEC의 선거비용 공개화면 예시

Page by Page Report Display (Page 110507 of 110512)

EC HOME NEW SEARCH NEW ADVANCED SEARCH TO REPORTS INDEX

Goto Page # |<< First << Previous Next >> Last >>| View Full Report

202006209243920912_110507.pdf 1 / 1

Image# 202006209244031418

**SCHEDULE B-P
ITEMIZED DISBURSEMENTS**

Use separate schedule(s) for each category of the Detailed Summary Page

FOR LINE NUMBER (check only one)
 23 24 25 26 27a
 27b 28a 28b 28c 29

Any information copied from such Reports and Statements may not be sold or used by any person for the purpose of soliciting contributions or for commercial purposes, other than using the name and address of any political committee to solicit contributions from such committee.

NAME OF COMMITTEE (In Full)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Full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A. WINRED TECHNICAL SERVICES LLC

Mailing Address: 1776 WILSON BLVD SUITE 530
 City: ARLINGTON State: VA Zip Code: 22209

Purpose of Disbursement: MERCHANT FEES

Candidate Name: _____

Office Sought: House Senate President
 Disbursement For: 2020 Primary General Other (specify) _____

State: _____

Full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B. WINRED TECHNICAL SERVICES LLC

Mailing Address: 1776 WILSON BLVD SUITE 530
 City: ARLINGTON State: VA Zip Code: 22209

Purpose of Disbursement: MERCHANT FEES

Candidate Name: _____

Date of Disbursement: 05 / 29 / 2020

FEC Identification Number: _____

Transaction ID: SB23.5555
 Amount of Each Disbursement this Period: 12702.25

Memo Item: _____

원본 별도 다운로드, 출력 가능

정치자금에 관심 있는 시민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주요 정당의 회계보고서는 스캔 파일로 활용이 불가능했음. 이에 <열려라데이터 1기> 시민들과 참여연대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데이터로 재가공함. 해당 스캔 파일이 데이터로 변환된 후에야 통계를 내고 비교 분석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회계상의 오기입 문제부터,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문제, 통상적 선거비용과 선관위가 공개하는 ‘선거비용’의 괴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인됨.
- 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에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재가공 후 통계를 낸 결과, 민생당 회계보고서 중 수입·지출 총괄표와 총액이 다른 과목을 발견했음. 중앙선관위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목이나 내역 누락의 실수를 수차례 반복함. 2천여장이 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사본을 스캔하여 활용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로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임. 1차적 원인은 회계보고 담당자에게 있으나, 정당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 뿐 아니라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중앙선관위 또한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심 없는 국회

- 이처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고 통계를 내지 않았다면 회계보고서의 오기입 문제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것임.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자금내역이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되었다면 보다 일찍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임.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활용 가능한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임.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 상시 공개를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단 2건밖에 발의⁹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임기만료폐기됨. 21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공개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은 2020년 9월 15일 기준 단 1건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공개 방식을 일임하여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와는 거리가 있음.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공개의 시기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제40조와 제42조를 개정해, 수입 및 지출 원인이 발생한 직후 공개된 정치자금내역을 시민 누구나 살펴보고 쉽게 분석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치자금 상시·즉각·전체 공개

- 정치를 끝없이 불신하게 만드는 사건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돈(불법정치자금)이 있음. 감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임.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은 그 정당이 어떤 목적과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됨. 특히 선거시기에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함. 정치자금 내역은 별도의 정보공개를

⁹ [20163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과 [20190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청구하지 않고, 시민들이 서로서로 도와 입력하고 검수하는 과정 없이, 언제나, 누구라도 원하는 시민이 찾아볼 수 있도록 상시 공개되어야 함. 감시의 역할은 시민이, 감시를 위한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는 중앙선관위와 국회의 몫임. 참여연대는 정치자금내역의 전체를 누구나 활용가능한 데이터로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운동을 이어나갈 것임.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1대 총선 주요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

발행일 2020. 9. 27.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 당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